

2012



第二十八輯

治安論叢

治安政策研究所



第二十八輯

治安論叢

治安政策研究所

우리 경찰은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국민과 현장을 만족하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기 치안정책을 연구·개발하여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치안논총 제28집』은 ‘지역경찰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및 적정 소요 인력 산출’ 등 4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수록,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치안논총』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발간되는 제28집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알차게 활용되고 치안행정 및 경찰관련 연구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그간 연구에 전념하여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여 주신 연구진과 논총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10.

치안정책연구소장



총 목 차

- ◆ 지역경찰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및 적정 소요인력 산출 1
- ◆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85
- ◆ 교통약자를 위한 지능형 안전시설 설치방안 223
- ◆ 개도국 사이버수사기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311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研究陣》

연구위원 : 박 종 선 (백석대학교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9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5
제2장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97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에 관한 현황	97
1. 전체 범죄에서 성폭력 범죄 점유율	97
2. 연도별 발생 현황	98
3.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99
4. 피해자 연령별 발생 현황	100
제2절 최종심 선고유형별 현황	101
1.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101
2.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102
3. 최종심 징역형 선고형량의 연도별 현황	103
제3절 소결 및 제언	104
제3장 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6
제1절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발전과정	106
1. 제도의 취지	106
2. 발전과정	108
제2절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112
1. 전문가의 필요성	112
2. 전문가의 자격	114
3. 전문가의 역할	116
4. 전문가의 윤리 기준	120
제3절 소결	122

제4장	전문가 운영현황과 관련성 심층 분석	125
제1절	원스톱지원센터의 현황	125
1.	설치 현황	125
2.	운영체계	126
3.	운영성과 및 지원 사례	127
제2절	2010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127
1.	현황 분석	127
2.	분석에 대한 논의	128
제3절	2011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129
1.	제1단계 전문가	129
2.	제2단계 전문가	134
제4절	소결 및 제언	137
제5장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심층 분석	139
제1절	자료의 특성	139
제2절	도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141
1.	오리엔테이션	141
2.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143
3.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RM)	147
4.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149
5.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152
6.	타당성 평가	155
제3절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158
1.	CBCA와 RM의 채점자간 일치도 분석	158
2.	CBCA 채점 근거의 타당성 분석	161
3.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166
4.	기타	168
제4절	진술조사의 적정성 분석	169
1.	질문의 적정성 분석	170

2. 전반적인 조사의 적절성 분석	172
제5절 분석도구의 개량을 위한 제언	173
제6장 판사·검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78
제1절 조사의 과정과 방법	178
제2절 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180
1. 설문 응답 판사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180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판사들의 전반적 평가	180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181
제3절 검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183
1. 설문 응답 검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183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검사들의 전반적 평가	185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	187
제4절 아동·장애인 전담 판사·검사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	188
제7장 결론 및 발전방안	191
제1절 요약 및 결론	191
1. 전문가 참여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91
2.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에 대하여	191
3. 전문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192
제2절 발전방안	193
1.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	193
2. 조사관과 전문가의 공조를 위한 매뉴얼 작성	196
3. 효율적인 운영체계	197
4. 형사사법과 연계된 기관의 위탁교육	199
5. 1단계·2단계전문가의 통합 운영	199
6.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을 위한 제안	199
제3절 전문가 참여제의 성과와 전망	200
참 고 문 헌	203

부록 1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판사용 설문지	209
부록 2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검사용 설문지	215
부록 3 분석한 사례들의 특성과 보고서 내용 정리	221
부록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구성내용	222

표 목 차

〈표 2-1〉 전체 범죄중 성폭력 범죄의 비율	97
〈표 2-2〉 연도별 발생 현황	98
〈표 2-3〉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99
〈표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현황	100
〈표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101
〈표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102
〈표 2-7〉 최종심 징역형 선고 형량의 연도별 현황	103
〈표 4-1〉 윈스톱지원센터 설치 현황	125
〈표 4-2〉 성폭력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등 체계도	126
〈표 4-3〉 윈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현황	127
〈표 4-4〉 2010년 전문가 전문성 관련 현황 분석	128
〈표 4-5〉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129
〈표 4-6〉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130
〈표 4-7〉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분석 현황	131
〈표 4-8〉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자격증별·전공별 분석 현황	132
〈표 4-9〉 제2단계 전문가 의뢰 절차	134
〈표 4-10〉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135
〈표 4-11〉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136
〈표 5-1〉 행동변화 평가리스트	153
〈표 5-2〉 채점자별 CBCA 및 RM의 평정자가 일치도 분석 결과	159

〈표 5-3〉 집단별 CBCA 총점과 RM 총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61
〈표 5-4〉 채점근거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결과	162
〈표 5-5〉 사례별 최종 판단 결과	167
〈표 6-1〉 [판사] 설문 문항의 구성	178
〈표 6-2〉 [검사] 설문 문항의 구성	183

그래프 목차

〈그래프 2-1〉 전체 범죄중 성폭력 범죄의 비율 추세	98
〈그래프 2-2〉 연도별 발생 추세	98
〈그래프 2-3〉 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세	100
〈그래프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01
〈그래프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102
〈그래프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103
〈그래프 2-7〉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세	104

그림 목차

〈그림 4-1〉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130
〈그림 4-2〉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131
〈그림 4-3〉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현황	132
〈그림 4-4〉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135
〈그림 4-5〉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136
〈그림 5-1〉 조사자의 질문 유형	170
〈그림 5-2〉 피해보고 이후의 추적 질문 유형	171
〈그림 5-3〉 조사의 적정성	17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4년부터 1990년 사이에 미국의 Los Angeles에서 Raymond Buckey와 그의 어머니 Peggy Mc Martin Buckey가 강간, 수간, 구강성교 및 아동 마약주입을 포함한 65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 미국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 Mc Martin 사건은 엄청난 규모에 의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즉 재판은 시작부터 평결까지 7년간 계속되었고, 캘리포니아 주는 1,600만 불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65개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 판결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심증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수사 및 재판절차는 아동들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Mc Martin 재판은 아동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 호응하여 Vrij, Kneller, Mann에 의해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효력을 실험한 결과, CBCA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각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우리나라도 아동²⁾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³⁾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

1) K, Pezdek, A. Morrow, & I. Blandon-Gitlin, et. al.,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 familiarity affects Criterion-Bases Content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9, No.1, 2004, p.119.

2) 본 연구에서의 아동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8년 6,339건으로 2년 새 무려 1,180건이나 늘어났으며, 이 중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도 같은 기간 980건에서 1,220건으로 1.2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990건으로 하루에 2.7건, 한 시간에 0.1건이 발생하였다. 발생장소는 주거지 444건(44.8%), 노상 162건(16.4%), 유원지 61건(6.2%), 기타 323건(32.6%)로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인구수 당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원주시로 1인당 발생한 사건비율이 5.2%이며 전국 평균 2.9보다 약 1.8배가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논산 0.0%이다. 범죄자의 전

레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유일한 아동의 진술만을 가지고 실제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곧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와 함께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아동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과 함께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⁴⁾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진술능력을 고려한 심리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아동 피해자가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보호와 함께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제진실의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법원과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할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아동 성폭력피해 전문가 의견조치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전문가 참여제'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분석도구를 개량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이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성폭력 범죄발생의 현황을, 경찰과 검찰의 공식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격, 역할, 윤리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윈스토티원센터에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도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및

과를 살펴보면 초범 41.4%(230명), 재범 58.6%(32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20.3%이고 이종 전과자는 79.7%이다. 동종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33.4%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이웃, 친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 경우가 26.8%이었으며, 친족에 의한 경우는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 73%(400명), 주취 21%(115명), 정신장애 19.3%, 기타 15.3%를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4) 2010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성폭력 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이 14.8%로 나타났다.

진술조사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윈스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판사와 검사의 설문을 분석하였으며, 제7장은 결론 및 발전방안과 함께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성과와 전망으로 마무리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4항에 신설된 「전문가 의견조회」가 2010년 도입되어 2011년 현재 2년째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행동·진술분석가의 참여제 시행 이후 전문가의 자격과 평가도구에 의한 분석보고서를 검토·분석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참여제도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문가 제도의 운용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실제 공소제기와 재판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이해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제도의 취지대로 전문가 참여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일차적으로 2010년도부터 제도화하여 시행되고 있는 본 제도를 위해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이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를 점검해나가는 것을 출발로 하였다. 물론 이를 위한 현행법체계를 전제로 파악하여야 하나,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증거법이 발달된 미국의 연방증거법과 함께 검토한 후, 나아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경험은 바람직한가, 진술분석 평가도구의 적정성 또한 적절한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원래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참여제가 2011년 들어 2년차로 접어들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용의 모습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운용되고 있는가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제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본 제도를 받아들이는 판사와 검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증명력 판단의 단계와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한 의견이나 세부쟁점들을 살펴봄으로

써 시행 2년차의 초기시점에서 본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본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이러한 연구를 전개하기 위해 제2장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발생의 현황을 살펴본 후 최종심 신고형의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제3장은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유효성연구와 입법과정을 기술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증거법 제702조와 함께 비교법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본 제도를 위한 진술조사 참여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2010년도 전문가의 전문성 관련 현황과, 2011년도부터는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전문가의 전문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전문가에 대한 평가도 서술하였다.

제5장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27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2절에서는 각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 RM),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타당성 평가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함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제3절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제4절에서는 진술조사의 적정성 분석을 다루었으며, 향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참여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은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 심층면담한 내용 등을 기본적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물론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판사와 검사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제7장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안으로, 제1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향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의 평가와 전망으로 마무리 하였다.

제2장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에 관한 현황

1. 전체 범죄에서 성폭력 범죄 점유율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867,882건에서 2,168,185건으로 약 16%가 증가하였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10,189건에서 16,156건으로 58.5%의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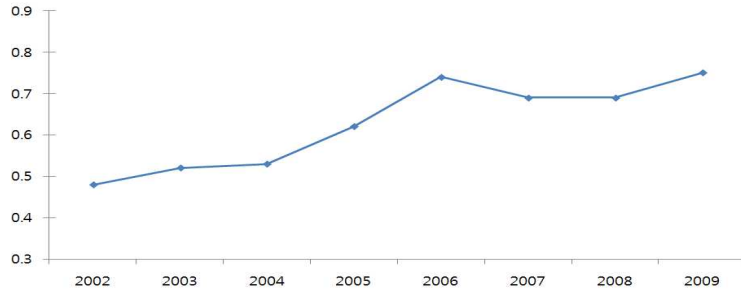
〈표 2-1〉 전체 범죄중 성폭력 범죄의 비율

(단위 : 명(%))

연 도	발 생 건 수		점유율(%)
	전체범죄	강간 등 성폭력	
2000	1,867,882	10,189	0.55
2001	1,986,980	10,446	0.53
2002	1,977,665	9,435	0.48
2003	2,004,329	10,365	0.52
2004	2,080,901	11,105	0.53
2005	1,893,896	11,757	0.62
2006	1,829,211	13,573	0.74
2007	1,965,977	13,634	0.69
2008	2,189,452	15,094	0.69
2009	2,168,185	16,156	0.75

* 출처: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483면.

〈그래프 2-1〉전체 범죄 발생증 성폭력 범죄의 비율 추세



2. 연도별 발생 현황

2007년 12월에 발생한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2008년도 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아동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220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16.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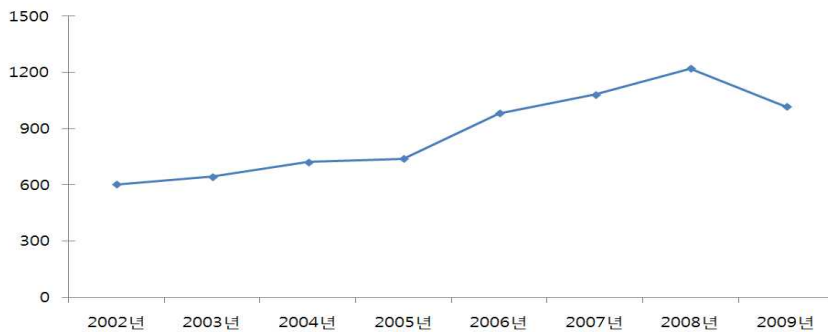
〈표 2-2〉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	600	642	721	738	980	1,081	1,220	1,017

* 출처 : 경찰청 범죄백서 2010.

〈그래프 2-2〉연도별 발생 추세



3.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표 2-3〉에서와 같이 아동성폭력 범죄 기소율의 경우, 전체 성폭력사건 처리 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전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낮아지고 불기소율은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다.⁵⁾ 반면, 아동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6~70%의 기소율을 보이고, 불기소율은 18~26%로 나타난다.⁶⁾ 이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보다 아동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평균 2~30% 높은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증거의 확보율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2-3〉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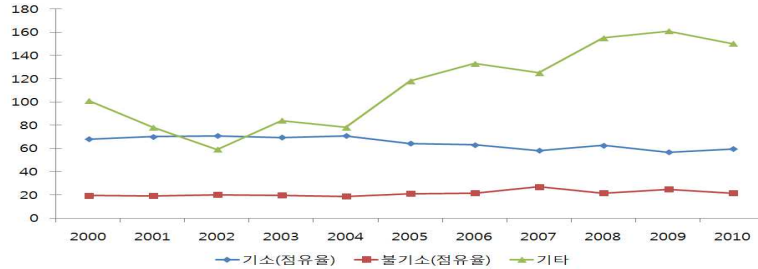
(단위:건(%))

연 도	구 분	접 수	처 리			
			계	기 소(점유율)	불 기 소(점유율)	기 타
2000		779	795	540(67.9)	154(19.3)	101
2001		708	709	496(70.0)	135(19.0)	78
2002		630	630	445(70.6)	126(20.0)	59
2003		754	761	528(69.4)	149(19.6)	84
2004		735	727	514(70.7)	135(18.6)	78
2005		799	790	507(64.2)	165(20.9)	118
2006		844	854	538(63.0)	183(21.4)	133
2007		851	840	489(58.2)	226(26.9)	125
2008		971	975	609(62.5)	211(21.6)	155
2009		874	872	494(56.6)	217(24.9)	161
2010(1~10)		845	792	471(59.5)	171(21.6)	150

*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487면(법무연수원 통계자료의 합계 숫자와 백분율 값이 맞지 않아 합계를 기준으로 재수정하였음)

- 5)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체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중 기소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47.2%, 2001년 48.4%, 2002년 46.4%, 2003년 47.0%, 2004년 42.0%, 2005년 42.8%, 2006년 43.9%, 2007년 43.3%, 2008년 43.2%, 2009년 41.1%, 2010년 42.8%(1-10월까지)로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기소는 2000년에는 40.9%, 2001년 40.7%, 2002년 43.3%, 2003년 42.7%, 2004년 46.8%, 2005년 47.8%, 2006년 46.4%, 2007년 47.4%, 2008년 46.8%, 2009년 47.9%, 2010년(1-10월까지) 46.7%로 불기소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484면).
- 6) 2009년을 기준으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불기소 내역 중 혐의 없음은 전체 처리인원 대비 10.9%이고, 공소권 없음이 4.4%로 확인되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처리 내역 중 혐의 없음 10.4%, 공소권 없음 32.1%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의 확보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래프 2-3〉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세



4. 피해자 연령별 발생 현황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7세 이상 13세미만의 아동이 81.7%를 차지하고 있고, 6세 이하의 아동이 18.3%를 차지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 연령의 피해자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75.5%에서 88.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⁷⁾

〈표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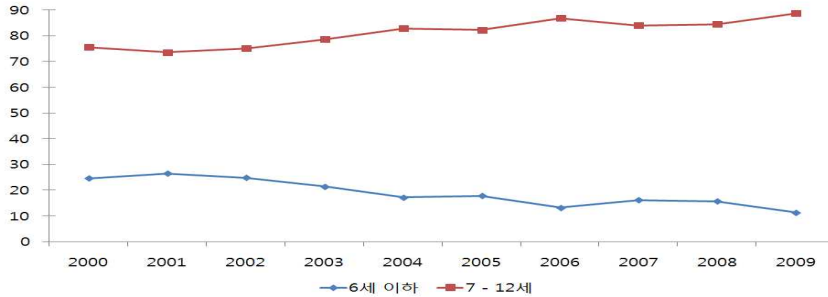
(단위:명(%))

연도	구분	피해자 연령		계
		6세 이하 명(%)	7-12세 명(%)	
2000		46(24.5)	142(75.5)	188(100.0)
2001		140(26.5)	389(73.5)	529(100.0)
2002		116(24.9)	349(75.1)	465(100.0)
2003		126(21.4)	463(78.6)	589(100.0)
2004		113(17.2)	545(82.8)	658(100.0)
2005		125(17.8)	577(82.2)	702(100.0)
2006		97(13.2)	636(86.8)	733(100.0)
2007		73(16.1)	380(83.9)	453(100.0)
2008		70(15.6)	380(84.4)	450(100.0)
2009		31(11.3)	244(88.7)	275(100.0)
계		937(18.6)	4,105(81.4)	5,042(100.0)

* 출처 : 김지선·박미량·윤정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여성가족부, 2010, 126-127면 발췌(참고자료의 2003~2005, 2007년도 합계 숫자와 백분율 값이 맞지 않아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수정하였음).

7)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 989명 중 남아가 60명(6.1%), 여아가 929명(93.9%)로 여자아동의 피해가 월등히 높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10, 93면).

〈그래프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제2절 최종심 선고유형별 현황

1.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최근 4년간 아동성폭력범의 최종심을 보면 1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82.0%로 가장 높다. 연도별 추세를 분석해보면, 1심에서 종료되는 비율은 2006년(84.3%)를 기준으로 2007년(81.7%), 2008년(78.7%)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2009년(85.0%)에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2심에서 종료되는 비율은 2006년(15.7%) 보다는 2007년(18.2%)과 2008년(21.0%)까지는 다소 높아지다가 다시 2009년(15.0%)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8년 조두순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어 2009년도에 항소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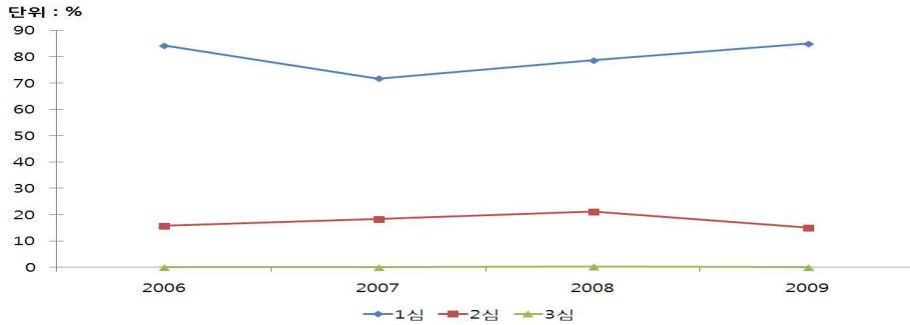
〈표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 최종심	1심(%)	2심(%)	3심(%)	계
2006	418(84.3)	78(15.7)	0(0.0)	496(100.0)
2007	318(81.7)	71(18.3)	0(0.0)	389(100.0)
2008	333(78.7)	89(21.1)	1(0.2)	423(100.0)
2009	108(85.0)	19(15.0)	0(0.0)	127(100.0)
계	1,177(82.0)	257(17.9)	1(0.1)	1,435(100.0)

* 출처 : 김지선·박미량·윤정숙,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10, 121면 발췌

〈그래프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2.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아동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선고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기징역(37.5%), 집행유예(25.6%), 집행유예와 보호관찰(24.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징역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는 2007년도에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벌금형 역시 계속하여 감소추세에 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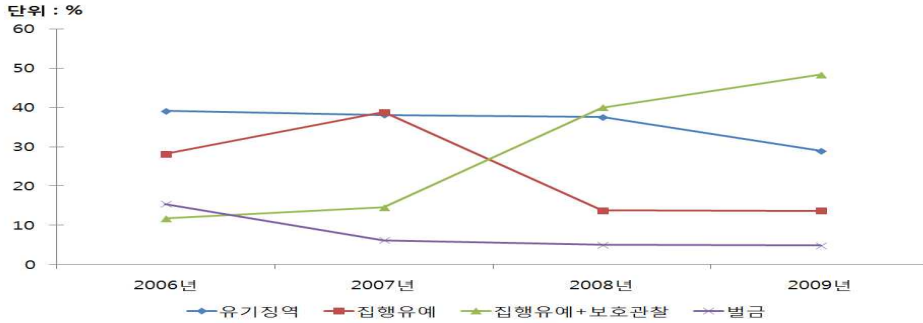
〈표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단위:명(%))

선고 연도	사형	무기 징역	유기 징역	집행 유예	집행유예 + 보호관찰	치료 감호	벌금	기타	계
2006	2(0.4)	4(0.8)	194(39.1)	140(28.2)	58(11.7)	1(0.2)	76(15.4)	21(4.2)	496(100.0)
2007	0(0.0)	2(0.5)	148(38.1)	151(38.8)	57(14.6)	0(0.0)	24(6.2)	7(1.8)	389(100.0)
2008	0(0.0)	4(1.0)	158(37.6)	58(13.8)	168(40.0)	3(0.7)	21(5.0)	8(1.9)	420(100.0)
2009	0(0.0)	0(0.0)	36(29.0)	17(13.7)	60(48.4)	5(4.0)	6(4.9)	0(0.0)	124(100.0)
계	2(0.2)	10(0.7)	536(37.5)	366(25.6)	343(24.0)	9(0.6)	127(8.9)	36(2.5)	1,429(100.0)

* 출처 : 김지선 · 박미량 · 윤정숙, 2010, 122-124면 발췌

〈그래프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 최종심 징역형 선고형량의 연도별 현황

최종심에서 징역형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10년 이상(25.8%)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1년 이상~2년 미만(23.4%), 2년 이상~3년 미만(1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년 미만은 전체 5.8%로 나타나고 10년 이상이 25.8%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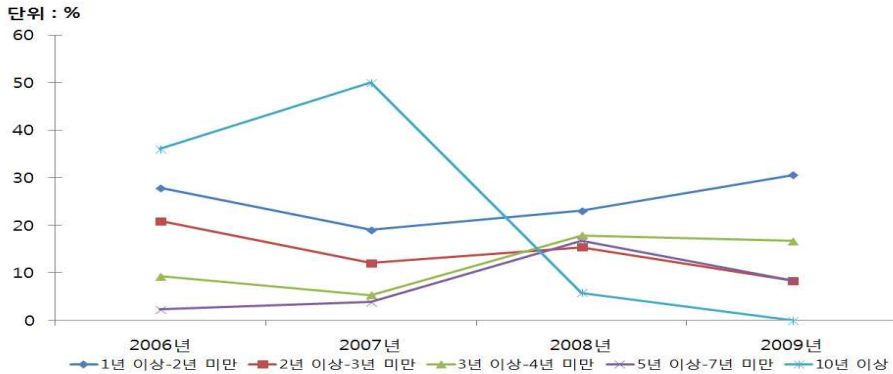
〈표 2-7〉 최종심 징역형 선고 형량의 연도별 현황

(단위:명(%))

형량 연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계
2006	1(1.2)	24(27.9)	18(20.9)	8(9.3)	0(0.0)	2(2.3)	2(2.3)	31(36.1)	86(100.0)
2007	7(5.3)	25(19.0)	16(12.1)	7(5.3)	4(3.0)	5(3.8)	2(1.5)	66(50.0)	132(100.0)
2008	14(9.0)	36(23.1)	24(15.4)	28(17.9)	9(5.8)	26(16.7)	10(6.4)	9(5.8)	156(100.0)
2009	2(5.6)	11(30.6)	3(8.3)	6(16.7)	8(22.2)	3(8.3)	3(8.3)	0(0.0)	36(100.0)
계	24(5.9)	96(23.4)	61(14.9)	49(12.0)	21(5.1)	36(8.8)	17(4.1)	106(25.8)	410(100.0)

* 출처 : 김지선·박미량·윤정숙, 2010, 126-128면 발췌

〈그래프 2-7〉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세



제3절 소결 및 제언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7~12세가 가장 높은 비율(36%)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피해자 10명중 약 4명 정도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라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범죄⁸⁾와 성인에 비하여 범죄신고 등 사후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임을 고려한다면, 아동성폭력범죄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심의 선고형으로는 벌금형은 줄어들고 있으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선고하는 유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범죄자가 초범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59.2%)이

8) 신고된 성폭력 대비 실제 범죄의 암수율 추정치는 형사정책연구원(2009) 8배, 여성가족부(2001) 168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수율 추정치는 조사형식이나 성폭력 개념의 유형에 따라 일관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 실태조사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이분석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암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의 생산주기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정기획수석, 대통령 서면보고서, 국책연구기관 정기 서면보고 자료 참고, 2010. 11. 15. 7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20%) 것 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기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증거불충분 내지는 혐의 없음 등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주된 논쟁은, 일관성 없는 아동의 진술 내지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훼손되어 유일한 증거인 아동의 진술이 배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전문가 참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발전과정

1. 제도의 취지

가. 2차 피해 예방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주는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아동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동이라는 특성상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나 암시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허위기억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뒤따른다(Faller, 2007; Hewitt, 1999; Vrij, 2008).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단계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나 이해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억능력이나 언어능력이 미발달된 아동이 진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조사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수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아동의 심리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진술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⁹⁾

아동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아동의 진술이기 때문에

9) 미국 Washing의 King군에 있는 아동법원은 아동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법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토요일의 법정학교에서 아동은 판사와 검사를 만나고, 법정 직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걱정에 관해 토론하며, 법정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법관과 검사들은 토론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올 재판에 대한 아동의 질문에 대답해 주며,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은 재판절차에서 긴장을 줄이는 방법들을 배운다. 아동법원은 종합적인 이수 과정을 발전시켜 왔고, 지난 9년 동안 1,200명의 아동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제도는 미국의 몇 개 도시와 해외에서도 모방되어 활용되고 있다(최승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아동진술의 문제점과 대책, 사실인정론 연구회 제1회 세미나자료집, 2005, 12-13면).

이러한 진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초동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유일한 증거인 아동의 진술이 훼손되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는 바로 2차 피해로 발전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정과 인지능력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가 수사과정에 참관하여 개별적 요구를 감안하여 조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나. 아동진술의 신빙성 확보

그동안 우리의 아동성폭력 관련대책은 주로 정부주도의 처벌강화¹⁰⁾와 재범억제방안¹¹⁾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의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점점 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또다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강하게 제시되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동성폭력의 특징이다.

유일한 증거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동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동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관되지 못한 아동의 진술은 결국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고, 나아가 처벌강화와 재범억제방안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10) 1994.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15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처벌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도 처벌강화 및 친족범위의 확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공소시효의 연장 등 외형상으로는 종전의 성폭력특별법 중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한 법률이나 실제로는 처벌을 더 강화시켰다.

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49호)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형집행 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에 의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5. 법률 제9944호), 치료감호법에 의한 성범죄 치료감호 대상 (2008. 12. 14 시행) 등이 있다.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진실발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의 발달과정과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병리의 발달에 대한 지식 내지는 아동 성폭력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증후 등을 이해한 아동 친화적인 심리전문가에 의한 의견조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¹²⁾

2. 발전과정

가. 태동

1954년 12월 14일 독일연방공화국 대법원은 음란행위(Unzucht)의 피해자인 7세 소녀의 진술에 대한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학자인 Undeutsch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Undeutsch는 진술자와 나눈 면담 녹음테이프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5명의 대법관은 분석 결과에 공감하였으며, 법정 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andere und bessere Erkenntnismittel)’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와 목격자 증언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 여부는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¹³⁾. 이 판결은 독일 증거법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 획기적인 판결 이후 독일법정은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심리학자를 계속 소환하게 되었다. 이후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독일의 심리학자들은 약 40,000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¹⁴⁾. 이른바 아동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배심원들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보다 성학대 피해 아동들을 많이 다루어 본 임상 전문가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더 낫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¹⁵⁾.

12) C. Alesander Morgan, Facts, Values, and Expert Testimony, The Hastings Center Report: 1993, p. 26.

13) BGH 7, 82-86 참조.

14) U. Undeutsch, Die Entwicklung der gerichtssychologischen Gutachte-ätigkeit, Göttingen: Verlag für Psychologie, 1954, pp. 103-104.

15) 조은경,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전문가 증언 활용방안, 2008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08. 11면.

이를 계기로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증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Ceci & Hembrooke, 1998; Saunders, 2001), 실제로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심리학 전문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onnolly, Price & Read, 2006). 이는 아동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물질적, 의학적 또는 보강증거가 부족할 때 더욱 요구된다(Kovera & Borgida, 1996; Sales, Shuman & O'Conner, 1994).

나. 우리나라에의 유효성 연구와 도입배경

1) 유효성 연구

우리나라에서 진술분석의 연구는, 2004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심리학전공인 이미션을 비롯하여 3명에 의하여 실시되었다.¹⁶⁾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394건 중, 진술조서에 나타난 조사자의 질문이 명백하게 강압적이거나 유도질문이 사용된 경우 또는 부모가 대신 진술한 경우를 제외한 총 82명의 피해자 진술조서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피해가 확실한 집단이 64명(78%), 애매집단 10명(12.2%), 의문집단 8명(9.8%)으로 나타났다.¹⁷⁾ 이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실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분석에 CBCA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진술조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김태경이 아동성폭력 피해가능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아동성폭력전담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2~13세 미만의 아동이 진술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정신과전문의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임상심리전문의의 종합심리평가와 NICHD¹⁸⁾ 조사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조사를

16)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55면.

17) 조은경, 위의 책, 30-39면.

18) Lamb, Sternberg, Esplin과 Orbach(1997)가 고안한 것으로,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NICHD)에서 사용하는 아동 성학대 조사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수

받은 아동 307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술관련요소와 임상증상요소가 이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지 검증한 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변인과 기준점수를 도출함으로써 아동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2) 도입배경

경찰청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전문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2007년 10월 10일부터 6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기법을 개발한 바 있으며¹⁹⁾, 이를 피해아동 조사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2008년 ‘조두순 사건’에 이어 2009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자, 2008년 4월 30일 범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해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경기대학교 이수정이 경찰청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시범운용을 위탁받아 이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전국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실제 성폭력 의심 사례의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하였다.²⁰⁾

많은 아동조사 관련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마련된 조사지침을 실제 조사에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조사규칙에 대한 설명과 연습에서부터 실질적인 조사 주제로 이동하는 다양한 기법, 그리고 개방적인 탐색질문에서부터 유도질문에 이르는 일련의 질문방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 프로토콜이 아동의 기억인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김태경, 아동성폭력 피해가능성 평가기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1면 참조).

19) 이윤호·이금형,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7, 207면.

20) 김태경, 박사학위논문, 2010, 15-16면.

다. 입법과정

2009년 11월 5일 최영희의원 등 13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한다(안 제22조의2제4항)’는 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안번호 제6469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하였다.²¹⁾

첫째,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진술이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피해아동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등 17건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국회법 제51조22)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통합·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조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제28조 제4항(전문가 의견조회)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21)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 11. 5.

22)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대검 형사2과 2010. 4. 15. 시행) 제6조 제1호 가항 제3호에서는 “피해자가 13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언어발달이나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여 아동심리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나항에서는 “피해아동 등의 연령이나 인지능력 등을 감안하여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조사 시 피해아동 등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아동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새로운 제도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전문가 후보자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²³⁾

제2절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1. 전문가의 필요성

오늘날 범죄는 점점 더 흉포화·지능화·상습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행동과 심리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고자 이러한 분야의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한 자들을 우리는 전문가(expert witnesses)라 하여 의견을 제공받는다. 전문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수사관은 물론 사실인정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유죄를 입증할 확률도 높아진다.²⁴⁾ 예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전문가 의견조회 관련 운영규칙, 대검 예규 제538호, 2010. 4. 13. 참조.

24) K. Lanning, K., *Child Molesters: A behavioral analysis for professions investig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5th ed.). OJDP: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를 들어, 의사들이 사망의 이유를 X-Ray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증거를 이해하는데 뒷받침을 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진술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진술이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전문가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재구성한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사실을 찾는 사람들(the fact finders)’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은 법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물론 상당한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의 발달이라든지 아동의 인지능력과 같은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어야 하는 법관의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존의 판단을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인정자들의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가로부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확정자(fact finder)인 법관은, 사실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을 확정한다. 사실 증인인 피해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진술하더라도 진술만으로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증인의 증언보다 높게 나타난다.²⁵⁾ 사실 증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판결을 결정할 때 물적 증거 외에 전문가의 증언은 법정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을 법정에 제공함으로써 실제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0, p. 122.

25) K. Lanning, K., op. cit., 2010, p. 130.

2. 전문가의 자격

전문가의 자격과 함께 뒤에 이어지는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증거법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미국의 연방증거법을 토대로 하여 살펴본다.

미국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702조에 의하면 전문가 증인은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의하여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즉,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있어 교육과 훈련, 경험 등을 통하여 높은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인이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다.²⁷⁾ 따라서 법원이 전문가로서 증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없으나, 적어도 아동성폭력사건의 분야에서 증언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이 기준에 따라 성폭력 이외의 또 다른 학대를 당한 아동을 다룬 경험이 없는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축적된 경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축적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²⁸⁾ 워싱턴 대법원에서 출발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획득하는 것이 전문가 증언으로서 가장 적합하다”(State v. Smith, 1977)는 이 의견은 미국의 모든 주마다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 비록 그들이 심리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라도 현장에서의 오래된 경험은 그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²⁹⁾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실무에서

26) 미국은 심리전문가의 증언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있으며, 미국의 증거법은 영미법계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증거법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영미법계의 증거법상 전문법칙을 우리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27) 이완규백승민 대표 번역, 미국증거법, 탐구사, 2009, 268면.

28) P. Stern, Preparing and Presenting Expert Testimony in Child Abuse Litigation: A Guide for Expert Witnesses and Attorneys, SAGE. Publicationsm London, 1997. p. 26.

29) P. Stern, Ibid. p. 27.

의 경험과 각종의 세미나에서 얻은 경험이 중요하다³⁰⁾(Kelly v. State, 1990).

1962년 Jenkins 판결³¹⁾은 '단순히 의학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심리학자들의 정신감정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라는 결정을 통해 알수 있듯이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는 높은 지식보다는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다. 비록 그들에게 학위나 논문 등은 없더라도 경험은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³²⁾

나.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그들에게 높은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위 없이 경험만으로도 전문가를 인정해주는 있으나,³³⁾ 그들이 전문가로 적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 선 전문가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 또는 학회에 속해있는지, 증언과 관련된 논문이나 출판의 경력은 있는지, 진술분석의 경험은 몇 건이나 했는지, 동료 간의 오차분석은 있었는지, 본인의 오차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거쳐 증언자로서의 전문가 자격을 확인 한다.³⁴⁾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학위, 연구경력,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증언의 허가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사다.

이와 같이 배심원이나 법관들이 사실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은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건은 전문적인 지식이다.³⁵⁾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높은 적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격성은 곧 높은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그 이유는, 연방증거법에 전문가에게 학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는 증거법에서 요구하는

30) Kelly v. The State., 197 Ga. App. 811, 399 S.E.2d 568.

31) Jenkins v. U.S. 307 F. 2d 637. 1962.

32) P. Stern, Ibid, p. 29.

33) P. Stern, Ibid. p. 32.

34) P. Stern, Ibid, pp. 26-29.

35) B. Klettke, A. C. raesser, & M. B. Powel, Expert Testimony in Child Sexual Abuse Cases: The Effects of Evidente, Coherence and Credentials on Juror Decision Mak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23, 2010, p.481.

36) Klettke, B., Graesser, A. C., & Powel, M. B., p.482.

전문성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인정자의 입장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증인의 경험과 지식을 학사 혹은 석사학위소지자 보다 더 높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특히 미국은, 아동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의학박사, 간호사, 법의학자 등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법원에 의해 고용되며, 전문단체들이 그들의 사무소에 전문가들의 리스트와 함께 연락처를 열거해 놓고 있다.³⁸⁾ 복잡하고 특수한 사건이 발생되면 필요한 전문가를 법조계와 변호사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기도 한다.³⁹⁾

3. 전문가의 역할

당사자주의 형사시스템에서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할에 의해 사실인정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생활의 보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 참여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관련기관과 법원에 제출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재판단계에서 전문가로서 증언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다.

심리학자들의 윤리적 원칙(APA, 1981)⁴⁰⁾을 강조하는 미국의 메타 원칙전문의 첫 문장은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

37) 조은경, 앞의 논문, 2008. p. 31.

38) P. Stern, Ibid. p. 33.

39) P. Stern, Ibid. p. 35.

4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36, 1981, p. 636.

여 노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진술분석 전문가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함께 개인의 자율성(APA, Principle 6) 및 프라이버시(APA, Principle 5)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뢰인이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민·형사상의 의무를 진다(APA, Principle 3c). 이 원칙의 주요목적은 정의를 추구할 기본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Thibaut & Walker, 1978).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예단해서도 안되며, 단지 그 평가에 의해서 소추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의견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진실발견을 통해 정의를 추구해야 하므로, 사건의 결과여부를 떠나 당사자들이 인격적 존엄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피해자가 소송절차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연령에 맞는 개념과 어휘를 사용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동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아동은 그로 인해 불안감을 가진다. 사건의 진행과 이후의 대안을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적극 도울 수 있다.⁴¹⁾ 아동에게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법제도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아동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전문가에 대한 윤리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제5조 가목의 규정에서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규정을 두어 '상담심리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 특히 수사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그들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41) G. B. Melton & S. Limber, op. cit, p. 1227.

42) http://www.krcpa.or.kr/intro/intro05_01.php 참조

나. 중립성을 유지한 객관적인 판단

전문가는 사실인정자 또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체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역할이다. 즉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치우친다면 균형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⁴³⁾

따라서 아동이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내지는 범죄의 유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그만큼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들의 의견은 법원에서 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적 분쟁이라도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적절한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들에 대한 증언역할은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료 분석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설명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⁴⁴⁾

다. 정확성을 통한 실체 진실발견의 추구

전문가들이 가장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정확성으로서의 진실이라고 생각된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의 제공은 그만큼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능력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이용하여 정확성으로서의 진실을 제시하겠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전문

43) 조은경, 증언대 위의 과학, 시그마프레스, 2008, 258-259면.

44) 미국의 경우 전문가를 지명자는 자에게, 그에 의한 증언이 사건의 주요문제와 관련되어 배심원을 도울 것인지의 여부와 증언이 편파적이지 않고 실증적인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N. Vidmar, Expert Evidence,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Ju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5, No. S1, 2005, p.137).

45) G. B. Melton & S., Limber, Psychologists' Involvement in Cases of Child Maltreatment: Limits of Role and Expertis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44. No 9, p.1226.

지식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지식의 관점과 정확성의 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문가는 의견제시를 거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전문가가 받은 교육이나 훈련, 상담 또는 직업적 경험에 기초하여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⁴⁶⁾

라. 법정의 증언자

위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①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들 또는 자료들에 기초하고(전문성 expertise), ② 그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들과 방법들에 따른 결과이며(관련성 relevance), ③ 증언이 그 원칙들과 방법들을 신용성 있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였을 때(신뢰성reliability) 그에 대하여 의견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연방증거법 제702조). 이는 특정한 전문영역의 전문지식이 사실판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전문가의 증언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동·장애인의 수사과정에 참관하여 녹취록은 작성한 후, 그에 의거한 전문가의 의견은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에 해당한다.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는 아동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서류로 작성하거나, 그 경험한 사실을 신뢰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진술 내용을 서류의 형태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문가가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성자의 자필로 되어 있거나 그 서명·날인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6) 조은경, 증언대 위의 과학, 258-259면.

전문가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아동의 진술을 녹취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경우에 따라 전문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는다. 이 때 전문가는 반드시 법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유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문가는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신뢰로운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전문가는 자신이 분석에 사용한 사실정보(facts)와 그로부터 도출된 의견(opinion)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⁴⁷⁾

4. 전문가의 윤리 기준

전문가들이 수사단계에서 아동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윤리적 문제에 더욱 직면하게 된다.⁴⁸⁾ 성폭력범죄의 고소 및 범인의 기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심리학자 및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⁴⁹⁾ 진술신빙성평가를 심리전문가의 영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윤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⁵⁰⁾ 아직까지 우리의 형사제도 안에서의 전문가제도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다. 전문가에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증언이 허용되려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정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이어야 증거로서의 허용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성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진실발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이를 윤리적 의무라 한다. 전문가에게 윤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정당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공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47) 조은경, 진술신빙성 평가에 있어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492-493면.

48) G. B. Melton, S. Limber, op. cit., p.1225.

49) G. B. Melton, S. Limber, op. cit., pp.1225~2226

50) 조은경, 증언대위의 과학, 493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합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유효하지 못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에 대해 정당화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화되지 못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바로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그렇다면 적합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적합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고려하고 난 후,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Kumho Tire Co. v. Carmichael*⁵²⁾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 전문가는 '동일한 지식의 엄정성 테스트(A Same Intellectual Rigor Test)⁵³⁾'를 필요로 한다. 즉 동일한 전문가들 내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엄정하게 판단한 것을 법정 증거로 사용하도록 미국의 법정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 증거의 허용규칙은 전문가의 윤리적 기준과 부합되어야만 증거로서 허용한다.⁵⁴⁾ 이러한 윤리적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내놓은 객관적인 의견을 함께 검토한 후에 적용한다.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전문가는 아동의 행동과 심리상태를 판단한다. 즉 올바른 의견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신뢰성

전문가 증언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윤리는, 항상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⁵⁵⁾ 독립적인 전문가는 어느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초래할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실과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그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윤리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돕는 것이라는

51) S. Sanders, *Expert Witness Ethics*, *Fordham Law Review*, Vol. 76, No 3, 2007. pp. 1540-1541.

52) *Kumho Tire*, 526 U.S. at 152

53) A Same Intellectual Rigor에서 본 논문은 'Rigor'을 '정당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54) S. Sanders, *op. cit.*, p.1546.

55) L. Steven, *Expert Witnesses: Ethics and Professionalism*, 12 *Geo. J. Legal Ethics* 465, 267, 1999.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⁵⁶⁾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수사 이후의 대안도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소송의 진행에 관해 아동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그만큼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역할은 곧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만드는 것이다(Lind & O'barr, 1978).

형사소송은 범죄자의 유·무죄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목표로 한다. 이때 사람은 물적 증명 수단 외에 이러한 수단 및 그 형식화된 사용으로 제한된 법정 내에서 진실을 추구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전문가는 도구적 기능 내에서, 즉 자신의 의뢰 범주 내에서 전문 분야의 전문지식을 법정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친다. 사실인정자인 법관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가는 그에게 부과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되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편견을 우려하여 기피당할 수도 있다.⁵⁷⁾

제3절 소결

2010년 4월 15일자로 제도화된 전문가 의견조회는 아동의 2차 피해의 예방과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실체진실을 위해서는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의 각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에 대한 각 단체와 학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56) G. B. Melton, S. Limber, Psychologists' Involvement Cases of Child Malterat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9, 1989, p.1231.

57) H. H. Rúpíng, Zur Rolle des Sachverständigen im Strafverfahren, Hannover. 1. Der Sachverständige als Beweisperson

58)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출처는 2010년 송동호·정성훈 외(2010), 앞의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발

첫째, 한국 여성상담센터에서는 2005년 8월에 제1기 아동성폭력 피해자 평가전문가과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을 중심으로 하며 진술녹화분야 전문가의 실제 사례 설명과 함께 실습 및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상담원, 각 병원 및 상담기관 임상전문가 및 상담전문가, 종교기관 상담원, 상담 및 임상전공·사회복지 석사과정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해송아동복지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성학대상담원교육을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호주의 Jemmy Wing을 강사로 하여 호주에서 신입 아동성학대상담원에서 실시하는 7주 기본과정 중 진술조사에 대해 8시간을 배정하였다.

셋째, 학계 공동 전문가 과정으로 2009년 11월 21일에서 12월 6일까지 6일에 걸쳐 제1기 성폭해 아동 진술평가 전문가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대구대학교 아동심리치료연구소, 한림대학교 법심리학 연구소에 의해 개설되어 수료증이 부여되었다. 본 과정은 3차에 걸쳐 총 64시간 실시되었으며, 교육의 우선 대상자는 놀이치료사로서 성 피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시도한 첫 과정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넷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와 전담요원 교육과정으로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제도에 근거하여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원스톱센터 지원인력 교육”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009년 교육은 1박 2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아동의 진술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진술내용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위탁받아 2010년부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행 전문가의 자격요건과 교육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요건으로는,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간호학 및 기타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① 박사학위 취득 후, 관계기관 종사경험 1년 이상인 자 또는 ② 석사학위 취득 후, 관계기관 종사경험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으로는, 총 180시간을 3주에 걸쳐 이론 100시간, 실습 80시간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면담을 거쳐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된다.⁵⁹⁾ 100시간의 이론은 소양교육의 과정으로 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정책 등 14시간, ② 다음은 전문교육으로, 피해아동 및 지적장애인 면담기법 등 86시간, ③ 워크숍과정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진술과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 및 서구의 연구동향 등을 파악한다. 이어 실시되는 80시간의 실습시간은, 면담기법 40시간과 보고서 작성 40시간(슈퍼비전 : 개인·집단 슈퍼비전 실시)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발급 후 심사과정을 과정을 거친 후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를 위한 양성과정이 민간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 후 어떠한 경험을 쌓고 어떠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슈퍼비전을 해준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얼마만큼 쌓은 사람이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전문가에 대한 자격과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9)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자료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womanchild.or.kr>).

제4장 전문가 운영현황과 관련성 심층 분석

제1절 원스톱지원센터의 현황

1. 설치 현황

경찰청은 2005. 8. 31.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내에 처음으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확대·설치하여 2011. 2. 28. 현재 전국에 21개소의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⁶⁰⁾ 본 센터는 조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설치하여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수사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을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충남, 경기, 경남, 제주, 전남 등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⁶¹⁾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되어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⁶²⁾

〈표 4-1〉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현황

(‘11. 02. 28현재)

구 분	병 원	개소일	인 원				
			소계	경찰	상담	행정	간호사
서울	경찰병원	’05. 08	10	4	5	1	-
	보라매병원	’08. 12	10	4	4	1	1
	서울대병원	’11. 02	15	4	7	1	3
부산	동아대병원	’05. 12	10	4	4	1	1
대구	대구의료원	’06. 05	10	4	4	1	1
인천	인천의료원	’06. 03	10	4	4	1	1
광주	조선대병원	’06. 09	10	4	4	1	1
대전	충남대병원	’06. 09	14	4	5	1	1
울산	동강병원	’06. 01	9	4	3	1	1
경기	아주대병원	’06. 11	10	4	4	1	1

60)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

61) 2010. 7. 경찰청 브리핑 자료 참조.

62) 이수정,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27면.

구 분	병 원	개소일	인 원				
			소계	경찰	상담	행정	간호사
	의정부의료원	'07. 09	10	4	4	1	1
강원	강원대병원	'06. 02	9	3	4	1	1
	강릉동인병원	'10. 09	10	3	5	1	1
충북	청주의료원	'06. 02	10	4	4	1	1
충남	단국대병원	'10. 01	10	4	4	1	1
전북	전북대병원	'06. 02	10	4	4	1	1
전남	성가톨릭병원	'10. 01	10	4	4	1	1
	목포중앙병원	'10. 09	10	3	4	1	2
경북	안동의료원	'06. 01	9	3	4	1	1
경남	마산의료원	'06. 12	9	3	4	1	1
제주	한라병원	'06. 12	9	3	4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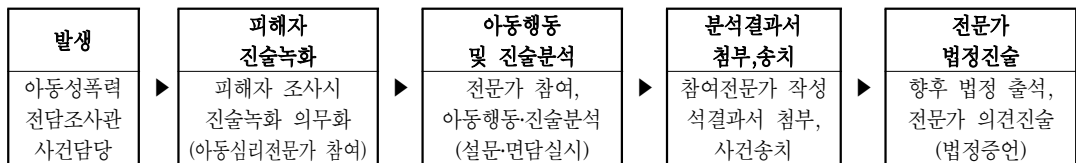
* 출처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

2. 운영체계

성폭력특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통합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이나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3월부터 서울과 경기권 5개 지역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참여제를 시범실시토록 하였으며, 이후 2010년 전문가 참여제가 입법으로 의무화된 이후 2011년 2월 현재 전국 21개소에서 아동 피해자 진술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성폭력 사건의 송치시 훈련받은 심리요원들이 피해진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한다.

〈표 4-2〉성폭력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등 체계도



* 출처 : 이윤호·이금형,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2호, 2007, 197면.

3. 운영성과 및 지원 사례

2007년 성폭력 등 9,35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14,546건, 진료 6,229건, 증거채취 2,117건, 진술녹화, 1,198건, 피해자조서 4,146건 등을 처리하였다(중복 처리). 이후 2008년 20.8%, 2009년 31.2%, 2010년 44.3%로 피해자가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2008년 7.2%, 2009년 10.7%, 2010년 2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3〉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1. 2. 28현재)

구분	피 해 자 (명:%)						지 원 내 용 (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학교 폭력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 조서
2007	9,352 (100.0)	5,701 (61.0)	2,463 (26.3)	103 (1.1)	336 (3.6)	747 (8.0)	28,236 (100.0)	14,546 (51.5)	6,229 (22.1)	2,117 (7.5)	1,198 (4.2)	4,146 (14.7)
2008	10,074 (100.0)	6,818 (67.7)	2,312 (23.0)	70 (0.7)	209 (2.1)	665 (6.6)	35,643 (100.0)	18,258 (51.2)	7,335 (20.6)	2,571 (7.2)	1,977 (5.5)	5,502 (15.4)
2009	10,471 (100.0)	7,140 (68.2)	2,348 (22.4)	116 (1.1)	177 (1.7)	690 (6.6)	41,020 (100.0)	21,400 (52.2)	8,632 (21.0)	2,876 (7.0)	2,273 (5.5)	5,839 (14.2)
2010	12,373 (100.0)	9,523 (77.0)	1,999 (16.2)	106 (0.9)	124 (1.0)	621 (5.0)	50,690 (100.0)	24,151 (47.6)	11,707 (23.1)	3,343 (6.6)	3,826 (7.5)	7,663 (15.1)
2011.2	1,556 (100.0)	1,191 (76.5)	255 (16.4)	13 (0.8)	11 (0.7)	86 (5.5)	6,661 (100.0)	3,353 (50.3)	1,461 (21.9)	441 (6.6)	466 (7.0)	940 (14.1)

* 출처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

제2절 2010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1. 현황 분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2010년과 2011년 전문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0년 자료는 학위, 전공, 및 관련 경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였으며, 등급이 불분명한 자격사항에 대한 정보만 주어졌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총 99명⁶³⁾이었으며, 이 중 52명이 범죄심리사 수련과정에 있는 자들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⁶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나머지 47명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학력과 경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매우 부족해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중복 합산하였다.

〈표 4-4〉2010년 전문가 전문성 관련 분석현황

(단위:명(%))

자격증 종류	빈도	비율(%)	자격증 종류	빈도	비율(%)
범죄심리사 1급	21	20	상담심리사	4	4
범죄심리사 2급	1	3	청소년상담사	12	12
범죄심리전문가	1	1	사회복지사	1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4	5	미술치료사	1	1
임상심리사	9	9	자격증 없음	51	51

* 전체 99명에 대한 비율임.

2. 분석에 대한 논의

분석결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만으로는 2010년도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분석할 것이 자격증의 정도로 그쳤으며, 그 결과 범죄심리사 수련생이 52명으로 아동의 행동·진술분석가로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

63)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위촉 대상자 78명과 21명으로 총 98명으로 기재되어있다. 이중 21명으로 기재된 내용 중 전복의 경우 수치1, 자격란에 2로 기재되어 있어 수치1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64) 정확한 자료가 부재하기는 하나 '범죄심리사 수련생' 들은 대학재학 중에 범죄심리사 2급을 준비 중인 상태이거나 대학 졸업 후 혹은 석사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범죄심리사 2급 또는 1급을 준비 중인 사람들로, 고졸 혹은 학사 수준의 인력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제3절 2011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1. 제1단계 전문가

경찰청은 행동·진술분석전문가를 2011년도부터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1단계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센터별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다.⁶⁵⁾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제1단계 전문가는 총 78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위분석

박사소지자 12명(15%), 석사학위소지자 63명(81%)으로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96%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재학중인자가 1명(1%), 석사수료자가 2명(3%)으로 석사학위 미소지자는 3명(4%)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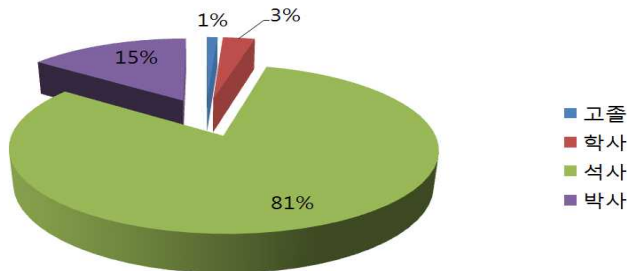
〈표 4-5〉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단위:명(%))

학 위 종 류		인 원(명)	비 율(%)
고 졸	대학재학	1	1
학 사	석사수료	2	3
석 사	석 사	57	73
	박사재학	4	5
	박사수료	2	3
박 사	박 사	12	15
총인원 = 78명			100.0

65) 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개선 계획, 2011. 4. 참조

〈그림 4-1〉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나. 전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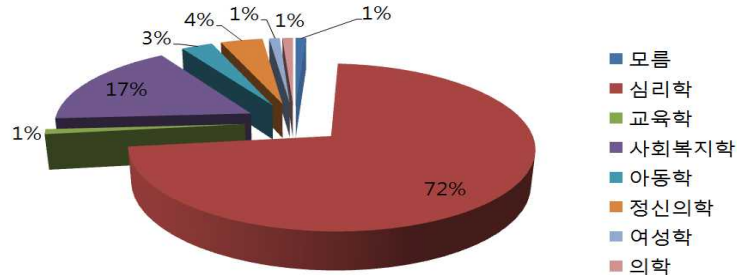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에 ‘심리’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예: 교육심리, 심리치료, 재활심리 등)에는 심리학으로 분류하였고, 복지상담, 아동복지, 및 청소년 복지는 그 성격 상 사회복지학에 포함된다고 보고 사회복지학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심리학 전공자가 가장 많은 56명(72%)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학 13명(17%), 정신의학 3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학(1%)과 의학(1%)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단위:명(%))

전공	인원(명)	비율(%)
알 수 없음	1	1
심리학	56	72
교육학	1	1
사회복지학	13	17
아동학	2	3
정신의학	3	4
여성학	1	1
의학	1	1
총인원 = 78 명		100.0

〈그림 4-2〉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다. 세부전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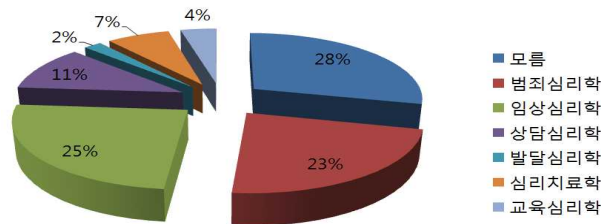
전체 78명중 56명(72%)이 차지하고 있는 심리학의 세부전공을 분석한 결과 임상심리학이 14명(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심리학(23%), 상담심리학(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을 전공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전공을 알 수 없는 자가 16명(28%)이 있었다.

〈표 4-7〉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분석 현황

(단위:명 (%))

전공	인원(명)	비율(%)
알 수 없음	16	28
범죄심리학	13	23
임상심리학	14	25
상담심리학	6	11
발달심리학	1	2
심리치료학	4	7
교육심리학	2	4
총인원 = 56명		100.0

〈그림 4-3〉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현황



라. 자격증 분석

위촉된 전문가들의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로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복 합산하였으며, 자격증 발행처와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함께 제시하였다. 교사, 보육교사, 간호조무사와 같이 본 전문가 제도와 사실상 무관한 자격증은 제외되었다. 한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와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및 사회복지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나머지는 민간 자격증에 해당한다.

자격증관련 정보가 부재한 사람이 4명(6%)이었으며, 1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0명(38%),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4명(56%)이었다. 범죄심리사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와 그 밖의 전문가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심리학관련 자격증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범죄심리관련 자격증이 24%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이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없어 자격증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4명(4%)이었다.

〈표 4-8〉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자격증별-전공별 분석 현황

자격증 영역	세부등급	자격요건	빈도	비율(%)
범죄심리학	범죄심리사 1급	학사(심리학전공 또는 부전공) + 800시간 실습 또는 300시간 수련	24	22
	범죄심리사 2급	학사(전공불문)+2년근무 또는 100시간수련	1	1

	범죄심리전문가	1급 취득 후 3년 근무경력 / 심리학관련전문가자격증취득자나 (종류무관)형사사법관련기관종사자 + 1500시간 수련	1	1
임상 심리학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학 석사+3년 수련 / 2급+5년경력	7	6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 학사+1년 수련	7	6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2급 후 5년 실무경력	0	0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 학사+1년 실습	8	7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학 석사+3년 수련+연구 / 박사+1년수련+연구	10	9
상담 심리학	상담심리사1급 (상담심리전문가)	박사+1년 경력 / 상담심리학 석사+3년 수련 / 2급+4년 경력	3	3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사+2년 수련 / 상담심리석사재학+1년수련 / 상담심리학사+3년경력	8	7
사회 복지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학 석사+3년 수련 / 2급+5년경력	0	0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 학사+1년수련	0	0
	사회복지사 1급	2급+1년 경력	11	10
	사회복지사 2급	(전공불문)전문학사+관련학점이수	6	5
청소년상담 학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경력 / 석사+4년 경력, 관련전공박사	2	2
	청소년상담사 2급	3급+2년 경력 / 학사+3년 경력 / 상담관련 석사	4	4
	청소년상담사 3급	고졸+5년 경력 / 전문학사+2년경력 / 상담관련학사	3	3
정신의학	정신과 전문의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 전공의 4년	3	3
기타영역	행동학습치료사 1급	주관학회 240시간 연수(관련정보부족)	1	1
	부부 및 가족상담전문가	다양한 학회와 기관에서 발급. 기관마다 자격기준이 상이함.	2	2
	발달심리사	관련학사+2년 수련	1	1
	미술치료사 1급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특정 시간 참석하면 자격증 부여. 자격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해서 공통된 기준 찾을 수 없음.	2	2
	미술치료사 2급		0	0
	중독심리전문가	심리학회주관1급자격소지자+중독관련1년경력+40시간교육	1	1
	건강심리전문가	관련석사+3,000시간수련 / 관련박사+1,000시간수련 / 관련분야 10년 경력	1	1
모름	(해당정보없음)		4	4
계		110건		100,0

* 중복합산된 빈도이며, 전체 78명에 대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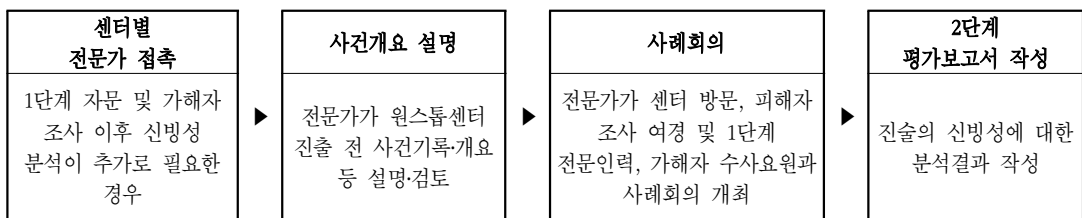
마. 분석에 대한 논의

김민지(2010)에 의하면, 사실인정자들이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분야에 대해 받은 훈련이었으며, 교육수준은 8개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또한 판사와 검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진술분석 경험에 비해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본 결과 제1단계전문가의 학위분석 결과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96%로 나타나 매우 만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제2단계 전문가

2단계 전문가는 심리학 교수급으로 경찰청에서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1단계 전문가들의 자문이후에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맡는다. 경찰청은 이들 전문가에게 신빙성을 분석 의뢰하기 전에, 관련사건에 대한 개요 및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 등을 설명한 후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전문가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⁷⁾ 구체적인 2단계 전문가에 대한 의뢰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4-9〉제2단계 전문가 의뢰 절차



2011년 제2단계전문가는 총 18명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66) 김민지,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 및 증언의 허용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제 24권 제3호, 2010, 85면.

67) 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개선 계획, 2011. 4. 참조

가. 학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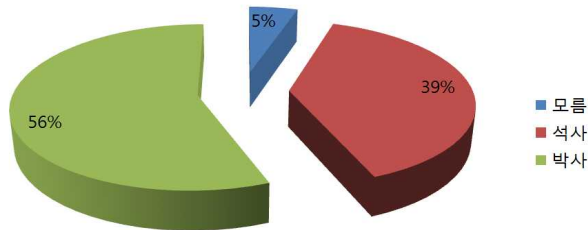
박사학위소지자가 10명(56%), 석사학위소지자 7명(39%)으로 석사이상학위소지자가 95%이며, 이중 학위소지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명(3.7%) 있다. 1단계 전문가에 비해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7.3% 높게 나타났다.

〈표 4-10〉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단위:명(%))

학위종류	인원(명)	비율(%)
알 수 없음	1	5
석사	7	39
박사	10	56
총인원 = 18명		100.0

〈그림 4-4〉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나. 전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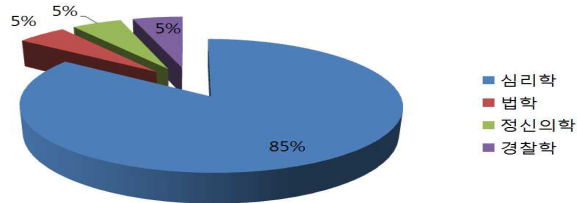
전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학에서는 두 명을 제외한 13명이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전문가에서는 교육학과 같이 아동발달 내지는 진술분석과 무관한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단계 전문가는 원예치료전공이 포함되어 이 또한 진술분석과 무관한 전공임을 알 수 있다.

〈표 4-11〉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단위:명(%))

전 공	인원(명)	비율(%)
심 리 학	15	85
법 학	1	5
경 찰 학	1	5
정신의학	1	5
총인원 = 18명		100.0

〈그림 4-5〉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다. 자격증 분석

위촉된 전문가들 중 13명(72%)이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회 및 성격심리 관련영역 전문가 2명(11%), 변호사 1명(6%), 기타 1명(6%)이었다.

라. 분석에 대한 논의

2단계 전문가들은 1단계 전문가에 비하여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7.3%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내지는 대학생의 학력을 가진 자는 없었다. 즉 1단계 전문가에 비해 관련 전문지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축적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지에 대한 분석은 정보가 매우 부족해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4절 소결 및 제언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리학(발달심리학, 법심리학,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기본 학력과 성폭력 및 아동 피해자 조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교육과 함께 진술분석의 경험을 축적한 자⁶⁸⁾라야 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다.

2011년도 제1단계 전문가의 분석결과 96%가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학력(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석사재학, 대학재학)가 4%가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한 전문가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지만 자칫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⁶⁹⁾

2단계 전문가 분석결과에서는 박사학위미소지자가 45%(8명)로 나타났다. 2단계 전문가들은 고도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수급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2단계 전문가 역시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보여진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진술분석전문가에 대한 학력이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시간 내지 몇 일 정도 교육⁷⁰⁾을 받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이 연구의 목적으로 CBCA 준거를 채점하여 집단간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으로는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서 특정 증인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이

68) 진술분석의 경험과 관련하여 조은경은 최소한 10건 이상의 사례분석 슈퍼비전을 받아야 독립적인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54면).

69) 석사재학중인 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학위를 알 수 없는 자 들은 당초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즉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관련 경력(피해아동 심리 상담 내지는 진술분석 경력 등) 2년 이상인 자'로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전문가로 위촉되었다.

70)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개발팀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이론교육 중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동발달 교육 1시간, 학령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사의 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 3시간, 학령기 아동을 고려한 진술조사의 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 2시간, 진술타당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진실진술과 거짓진술을 구분·비교할 이론적, 실천적 방법을 이해하는 교육 5시간 등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기본과정' 교육안 참조).

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Vrij, 2008)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아동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Smith v. Rasmussen사건⁷¹⁾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문가의 자격이 부족할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증언을 배척한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미약한 전문가의 의견 제출은 오히려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에 누를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분석한 의견에 대해 전문가 동료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부가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 진술에 대한 신빙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2011년 1단계와 2단계전문가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학력의 경우 대부분이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학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이들이 진술분석에 대한 오차비율을 최소화하고 심화된 교육으로 훈련을 쌓아간다면 아동진술의 신빙성확보를 위한 노력은 기대할 만하다.

71) 57 F. Supp. sd 736, 755(N.D. Iowa 1999).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 의료보조제도 혜택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 아이오와 주 지부장을 고소했다. 주 정부는 성전환수술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정신과 의사인 카발리에 박사의 증언을 제출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가 증언하려는 주제에 대해 충분한 훈련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거부했다.

제5장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심층 분석

본 장에서는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경찰청에서 위촉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동행동·진술분석도구의 적정성을 먼저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전문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 진술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진술신빙성분석을 위해서는 진술조사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며 조사가 부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신빙성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자료의 특성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보고서는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보고서에 기록된 사건관련 내용과 분석결과 및 별첨된 녹취록의 내용이 상이하여 제외되었다. 보고서와 녹취록 이외의 정보가 주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등급 등도 알 수 없는 사례가 다수였다. 작성일자가 삭제되어 있는 보고서가 다수였기는 하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든 보고서가 2010년에 작성된 것 이었다.⁷²⁾

분석이 가능한 26건 중 15건(58%)에 녹취록이 별첨되어 있었으며, 11건(42%)은 보고서만 존재하였다.⁷³⁾ 녹취록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14건(54%)만이 증거기반내용분

72) 보고서의 검토결과 6개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10명의 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자격증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에서 학사(심리학전공)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에게 그들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2009년에는 1박 2일, 2010년에는 4일간)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73) 이 중 몇 건은 녹취록이라는 제목으로 된 첨부물이 존재하였으나 녹취록 작성자가 임의로 중간생

석(CBCA) 채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사실성 평가(RM)의 채점 근거가 제시된 사례가 2건(8%)이었으며, 오리엔테이션, 성폭력발생맥락평가, 행동변화평가 및 타당성평가는 점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 채점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없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삭제된 채 제공된 자료가 다수 있어서 정확한 연령은 알 수 없었으나, 보고서 및 녹취록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취학 아동(만5세)은 1건(4%)이었고, 초등학생 16건(62%), 청소년 4건(15%), 그리고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 5건(19%)⁷⁴⁾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다른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사례 7건(27%), 가해자 자백 5건(19%), 목격자 진술 6건(23%), 물리적 증거 3건(12%) 및 의학적 증거 1건(4%)이었다. 종류와 무관하게 피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사례가 15건(58%)이었으며, 2개 이상의 증거가 존재하는 사례는 6건(23%)이었다.

한편, 주어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26건 모두 피해자가 매우 높은 진술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진술동기에 매우 민감한 CBCA 점수(Hershkowitz, Horowitz, & Lamb, 2007; Hewitt, 1999; Vrij, 2008)의 평균이 무려 20점(범위: 11~27점)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⁷⁵⁾ 또한, 1건을 제외하고는 진술이 매우 유창하거나 명백한 행동 혹은 정황적 증거가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례들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증해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예를 들어, 김태경, 이영호, 2010a; Faller, 2007; Vrij, 2008)와는 상반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 주어진 사례들이 성폭력 피해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대표하지는 못함을 시사한다. 사례 별로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락을 하여 전체 조사의 흐름과 진술양상 검토가 곤란하여 녹취록으로 보기 곤란하여 '녹취록 부재 사례'로 분류하였다.

74)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등급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75) 물론 채점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창한 편이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CBCA 점수가 19점 이상이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점이라는 평균은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도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모든 보고서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와 이수정 교수가 경찰청의 위탁을 받아 2010년에 실시한 성폭력 피해아동전담요원교육 자료집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⁷⁶⁾ 이 중 13건(50%)이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2건(46%)의 지도감독자가 동일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1건(4%)의 지도감독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경장)이었다. 이 보고서는 오리엔테이션,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사실성 평가(RM), 성폭력 발생 정황 평가, 행동변화 평가, 타당성 평가 및 종합소견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참조).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테이션

가. 도구에 대한 설명

이수정(2010)에 따르면 오리엔테이션은 성폭력피해 진술의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아동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구이다. 모든 내용은 그림으로 보다 재미있게 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확인할 주요개념은 안과 밖, 신체 부분 명칭, 성별·연령파악, 숫자개념, 진위개념, 접촉인식으로 총 6개 항목이다.⁷⁷⁾

오리엔테이션 결과는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기는 하나 이를 토대로 진술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술조사 시 경찰과 함께 입실하여 경찰의 조사 시작 멘트가 끝나면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전문가가 시작한다. 아동과 라포형성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문제(예: 안과 밖, 해부학적 그림을 보고 신체 부위의 명칭 맞추기 등)를 풀도록 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조사단계가 이어진다. 한편,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의

76) 이수정. 성폭력피해아동 전담요원 교육 자료집.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2010.

77) 이수정,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3호, 2009. 150면.

앞부분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녹취록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생략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이 도구의 목적과 용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보고서의 작성 지침을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라포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동의 발달수준을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오리엔테이션은 전문가가 조사의 도입부에 자연스럽게 라포형성을 하면서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정보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행 지침에는 라포형성을 위한 지침이 담겨있지 않다.

또한, 발달수준 관련 정보는 조사의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필요하며 조사 이전에 파악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자와 공유하지 않고 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오리엔테이션 결과는 사실상 조사자의 진술조사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전문가가 조사 시 동석하여 파악하기보다 조사에 앞서 미리 아동 및 보호자와 면담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조사자에게 전달하여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진술신빙성 분석 시 참고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조사 이후에 실시하거나 보호자와의 면담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수의 전문가들이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진술능력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었다. 진술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진술조사의 계획과 수행, 나아가 진술의 신빙성 분석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수사적인 맥락에서의 '진술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진술능력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① 사건을 경험할 때 인지가 이루어진 과정, ② 사건 당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한 기억능력의 정도, ③ 기억을 회상하여 끄집어 낼 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개념이다.⁷⁸⁾

이는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연산 과제와 신체부위인식, 성별과 연령 파악, 진위개념, 접촉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 결과만으로는 진술능력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가. 도구에 대한 설명

이수정(2010)에 따르면 CBCA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방법으로, 5개의 범주에 19개 하위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지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개별 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서,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 준거는 0, 1, 2점으로 채점되는데,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내용이 없으면 0점, 피해가 있기는 하나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약간 존재하면 1점, 피해사실이 명백하고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풍부하면 2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수정(2010)은 총점 38점 중 19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도록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CBCA는 일반적 요소와 표현요소, 진술내용요소, 동기부여요소, 그리고 범죄의 전형성 관련 요소로 구분되며,⁷⁹⁾ 진술조사 녹화 영상물을 보고 진술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19개 요소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 0, 1, 2점으로 평정한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CBCA는 Undeutsch⁸⁰⁾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기억에 대한 진술이 허위나 상상에 근

78) L. Greuel, S. Offe, A. Fabian, u. a., Glaubhaftigkeit der Zeugenaussagen München: Psychologie Verlags Union, 1998, SS. 89-90.

79) M. Steller, Recent developments in statement analysis, IN J. C. Yuille, Credibility Assessment, Itely: Marratea, 1989, p. 149; G. Köhnken, & H. Wegener, "Zum Stellenwert des Experiments in der Forensischen Aussagepsychologie",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und angewandte Psychologie, 32, 1985, SS. 104-109.

거한 진술과는 내용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진술 사실성평가(Statement Reality Assessment: SRA)를 Steller와 Köehnken(1989)이 체계화한 진술타당성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에 포함된 하나의 분석 단계이다. CBCA가 거짓을 말하는 아동과 진실을 말하는 아동을 타당하게 변별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연구결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경찰청 위촉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동행동·진술분석 기법에서는 CBCA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BCA는 타당도분석결과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⁸¹⁾, 이들은 CBCA와 타당도 분석을 독립적인 분석 도구로 간주하여 둘 중 하나에서 절단점수 이상을 얻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SVA는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는 ‘진술신뢰도평가’ 기법으로⁸²⁾ 제1단계에 해당하는 적정한 조사기법에 의한 진술조사, 2단계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그리고 3단계인 타당도 검토로 구성된다. 만일 1단계인 진술조사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에 대한 CBCA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CBCA후에는 반드시 타당도 관련 변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또한 타당도 관련 변인들을 검토한 결과, 진술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인이 존재한다면 CBCA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현 분석기법에서는 조사자의 암시나 아동의 거짓말 등을 수십 개의 항목 중 일부로 포함

80) U. Undeusch,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ratea, Italy, June 1988, pp. 103-104.

81) 타당도 평가(Validity Checklist)는 SVA의 3번째 절차이다. 즉 진술분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첫째 아동의 연령과 정신적인 성숙도 등과 같은 진술능력을 파악하고, 조사자가 행한 질문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등을 참작하여 아동이 진술한 것에 대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둘째는 장시간에 걸친 조사자의 다양한 면접조건하에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의 요소가 진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가와 같이 구체적인 타당도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적정절차를 통해 확보된 아동의 진술은 CBCA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후, 분석한 결과에 다른 ‘외적인 영향(external factors)’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즉 타당도 평가는 CBCA에 의한 진술분석의 질적 평가에 덧붙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박종선, 증명력 판단기준, (주)한국학술정보, 2008, 228면; M. Steller, op. cit, p. 141; M. L., Gegers, op. cit, p. 14).

82) 박종선, 앞의 책, 26면 참조.

시킨 후 수십 개 항목을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 이 점수가 기준점을 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작화 경향성이 명백하다면 그것만으로도 CBCA점수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며, 아동의 진술신빙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CBCA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 특히 언어적 유창성을 감안해야만 하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의 절단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어린 아동의 사례에서 CBCA를 사용하는 것은 오부정 오류, 즉 피해 아동을 비피해 아동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CBCA점수가 아동의 언어능력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유회상 능력이 부족하여 아동이 보호하는 정보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 이 때문에 Wells와 Loftus(1991)는 어린 아동의 진술에 대해 CBCA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

셋째, 이 도구는 명확한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채점자 간 점수의 일치율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Mazzoni & Ambrosio, 2003; Vrij, 2008). 이는 채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신빙성판단의 정확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진술분석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사 수준 이상의 자들이 1박 2일 혹은 4일 간의 교육 후 곧바로 실제 사건의 분석에 투입되었고 이들이 실제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이들의 전문성이 다소 염려스럽다.⁸³⁾

넷째, 19개 준거의 점수를 단순 합산한 후 절단점수를 적용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진술분석은 진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⁸⁴⁾. CBCA는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기준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다.⁸⁵⁾ 하지만, 거의 모든 전

83) 송동호·정성훈·정운선·양수진·김태경·김해숙·이현혜, 성폭력피해아동 진술과정참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여성가족부, 2010.

84) 조은경, 국회입법부와 관련된 효과적인 구술조사기법 개발,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35면.

85) G. Mazzoni, K. Ambrosio, L'analisi del resoconto testimoniale in bambini: impiego del metodo di analisi del contenuto C.B.C.A. in bambini di 7 anni. *Psicologia e Giustizia*. (Analyzing child witness reports: using the C.B.C.A. in 7-years-old children). *Archive*, 1. 2003, p. 12.

문가들이 19개 요소의 총점을 산출하여 절단점수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다섯 개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plin, Boychuk과 Raskin⁸⁶⁾은 처음 다섯 개 요소의 점수에 근거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며, Yuille⁸⁷⁾는 처음 다섯 개 요소의 점수와 나머지 요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두 요소를 선택하여 그 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⁸⁸⁾ 그 이유는 CBCA 준거들 마다 상이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는 현 분석가들이 총점 산출 후 절단점수를 적용하여 신빙성여부를 최종판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⁹⁰⁾

다섯째, 경찰청 위촉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절단점수인 19점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령대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는 하나, CBCA에서 19점을 얻기란 쉽지 않아서 이미션⁹¹⁾의 연구에서는 3-6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8.61(SD=3.65), 7-9세는 10.59(SD=4.03), 그리고 10-12세 11.95(SD= 3.84)로 나타난 바 있다. Blandon-Gitlin 등⁹²⁾의 연구에서도 진실한 진술과 허위진술에 대한 CBCA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진실한 진술의 CBCA 평균이 12.02점이었고 암시에 의한 허위 진술의 평균은 10.88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⁹³⁾, 19점은 타당하지 않은 기준치일 수 있으며, 연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부정 오류율을 심각하게 높일

86) P.W. Esplin, T. Boychuk & D.C. Raskin, "A field validity stud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abuse case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s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ratea, Italy: June, 1988.

87) The slides will be in the Yuille lab website:
<http://www.psych.ubc.ca/%7Ejyuille/coures.htm>.

88) G. Mazzoni, K. Ambrosio, Ibid, p.7.

89) K. Pezdek, A. Morrow, & I. Blandon-Gitlin, et al.,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t familiarity affects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No.1, 2004, p.119.

90)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일례로, 1999년 7월 30일 판결(BGH. Urt. vom 30. Juli 1999-1 StR 618/98 LG Ansbach)에서도 전문가의 진술신빙성 감정과 보고서 작성 기준을 명시하였다. 진술신빙성 평가는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구체적인 가설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단점수(Cut-off-points)를 사용한 기계적인 CBCA 적용은 부적절함을 본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91) 이미션, 앞의 논문, 2004, 63면.

92) I. Blandon-Gitlin, K. Pezdek, D. S. Lindsay, & L. Hagen,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true and suggested accounts of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2009, pp. 901-917.

93) 물론 기계적으로 절단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절단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초보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어 줄 수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절단점수는 없는 것보다 결코 낫지 않으므로, 유용한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도구활용 이전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RM)

가. 도구에 대한 설명

이수정(2010)에 따르면 사실성 평가는 CBCA의 보충 또는 대안으로써 제시되는 도구으로써 허위진술과 진실한 진술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사실성 평가의 근본적인 가정은 지각의 과정에 근거하는 기억과 내부처리에 근거한 기억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진실한 사건의 기억은 있음직한 지각적인 정보(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를 포함하고, 문맥상의 정보, 감정적이 정보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사실성 평가는 진술의 생생함, 감각기관의 정보, 공간정보, 시간정보, 정서와 감정, 이야기의 재구성, 사실성, 인지적 추론의 8가지 준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 전문가들은 Sporer⁹⁴⁾이 고안한 RM 준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 명료성(사건에 관한 기억을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하는가), ② 지각정보(청각, 냄새, 맛, 신체적 감각, 시각적 묘사와 같은 감각적인 경험들이 진술에 나타나는지), ③ 공간정보(사물이나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공간적 정보에 대한 내용의 유무), ④ 시간정보(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사건의 순서를 분명하게 기술하는 내용의 유무), ⑤ 진술의 일관성(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⑥ 정동(사건동안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⑦ 사실적 묘사(현실적이며 사리에 맞는가), ⑧ 인지적 추론(피해사건에 대해 추론하여 진술하지 않는가) 등 총 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준거는 0, 1, 2점으로 채점되는데,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내용이 없으면 0점, 해당하는 진술이 약간 존재하면 1점, 피해사실이

94) S. L. Sporer, The less traveled road to truth: Verbal cues in detection deception in accounts of fabricated and self-experienced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1997, pp. 373-397.

명백하고 풍부하면 2점을 부여한다.

CBCA와 마찬가지로 진술조사 녹화영상물을 보고 진술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8개 요소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0, 1, 2점으로 평정한다. 이들은 총점 16점 중 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이 도구는 CBCA 점수가 사건에 대한 익숙함(familiarity)과 코칭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점수를 근거로 피해 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오긍정 오류의 가능성이 높고, CBCA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면서⁹⁵⁾, CBCA의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CBCA와 마찬가지로 RM도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데 현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RM을 채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M을 아동성폭력 피해 진술분석에 적용하는 것의 적정성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아직까지는 RM이 CBCA의 대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CBCA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에 반해, RM 연구들은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⁹⁶⁾ 따라서, 아동성폭력 사례에 RM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⁹⁷⁾ 물론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Otgaar, Candel, Merckelbach와 Wade⁹⁸⁾는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RM의 시각, 시간, 공간, 청각, 인지, 정서 기준을 사용한 RM의 효율성을 연구한 결과, RM이 진실한 진술과 허위진술 모두에서 높게 나타

95) I. Blandon-Gitlin, K. Pezdek, D. S. Rogers, & L. Brodie, 2005; C. L. Ruby & J. C. Brigham, 1996; A. Vrij, L. Akehurst, S. Soukara, & R. Bull, 2004.

96) 김태경, 박사학위논문, 2010. 11면 참조.

97) RM의 기원은 SVA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여부에 국한된 것으로 성인에 대한 기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RM은 CBCA와 여러 면에서 중복되기도 하며, RM의 표준 준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진술의 진위여부를 탐지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실제 수사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재경, 형사절차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성 판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6면).

98) H. Otgaar, I. Candel, H. Merckelbach, & K. A. Wade, K.A., Abducted by a UFO: Prevalence information affects young children's false memories for an implausible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2009, pp. 115-125.

났으며 재면담 시에 조사자가 아동을 격려하자 점수가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수사적 장면에서 RM을 아동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둘째, RM과 CBCA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RM 기준들은 CBCA 준거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데, 예를 들어 공간정보와 시간정보는 CBCA의 맥락정보와 유사하며, 정서는 CBCA의 주관적 정신상태 진술과 유사하다. 또한, 이야기의 재구성 가능성은 CBCA의 논리적 일관성과 정연하지 않은 진술, 그리고 세부정보의 양과 유사하며, 현실성은 CBCA의 논리적 일관성과 유사하다. 또한 각각의 준거가 실제 사건의 거짓 탐지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상태이다.⁹⁹⁾

셋째, CBCA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절단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불리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CBCA에 비해 준거의 수가 적어 채점자간 일치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CBCA와 같이 채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채점의 정확도는 채점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가. 도구에 대한 설명

2010년도에 사용한 이 도구에 대해 “Faller¹⁰⁰⁾의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아동의 진술능력,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아동의 상태, 기타 정보라는 4가지 범주 속에서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아동과의 면담, 부모면담, 기타정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각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정보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성폭력 발생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할 경우에는 1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총점 25점 중 13점

99) A. Vrij, Detecting lies and deceit, John witey & Sons, LTD, 2000.

100) K. C. Faller,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controversies and best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이상이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이 도구의 적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2003년 Faller가 개발한 원래의 취지와 도구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aller는 아동성폭력 피해 가능성 판단을 위한 지표식 접근과 과정적 접근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피해가능성 평가 시 수집해야할 정보들을 충분히 탐색하여 타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학대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프로토콜(data for assessing the likelihood of sexual abuse’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토콜에는 아동진술자료(Child Interview Data)에 대한 검토와 아동 이외의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Faller, 2003).

1. 아동진술자료의 검토

- A. 성적 행위 :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자료들에는 성폭행의 유형,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적 진술(아동의 진술이 아동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지, 명백한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지), 성폭행의 시연(인형이나 그림 같은 시연보조도구 사용, 명백한 시연), 증가된 성적 지식이 있다.
- B. 성학대 발생 맥락 : 이 영역에서는 학대 발생 장소, 시간, 길들이기 혹은 유인 수단,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동의 옷, 용의자의 옷, 피해 중 발생한 독특한 사건과 정서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가해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폭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최초 폭로, 및 폭로 시 청취자의 반응 등의 정보를 검토한다.
- C. 진술취소
- D. 진술 과정 중에 관찰된 아동의 정동 : 진술 시에 관찰된 폭로의 꺼림이나 당혹감, 죄책감, 불안, 분노, 공포와 같은 그 밖의 정동을 드러내는지를 검토한다.
- E. 아동의 기능수준 : 사건 후 관찰된 아동의 성행동, 외현화 행동, 내현화 행동, 능력,

발달수준, 문화적 쟁점 등을 검토한다.

II.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 A. 의학적 증거 B. 경찰 수사 증거 C. 용의자 진술 D. 목격자 유·무
- E. 다른 피해자 F. 다른 맥락에서의 아동진술
- G. 다른 사람들(예: 부모)이 관찰한 관련 징후
- H. 다른 전문가가 제시한 증거
- I. 기타 정보

Faller는 가용한 모든 정보(배경정보, 검사, 면담 정보, 참고인 조사 결과, 표준화된 검사 등)를 동원하여 위의 프로토콜을 완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진술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사례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¹⁰¹⁾ 한편, Faller는 정보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해 5점 척도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1-매우 중요, 2-중요, 3-약간 중요, 4-중요하지 않음, 5-매우 중요하지 않음).

또한, Faller가 이 프로토콜을 개발한 목적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할 정보들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각 정보들에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신빙성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위촉한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들은 이 도구를 신빙성 평가 도구로 오용하고 있다. 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타 정보에 해당되는 의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 가해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은 해당 정보가 신뢰롭다면 다른 정보가 부재하더라도 아동의 피해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 전문가들은 이 정보들도 25개 중 1개의 항목으로 간주하여 다른 정보들과 합산, 13점이 넘어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Faller가 개발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101) Faller가 제안한 최종 해석의 유형에는 ① 돌봄 활동을 아동이 오해함, ② 소통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능성이 제기됨, ③ 누군가의 코칭에 의한 것임, ④ 성폭력 이외의 출처를 통해 습득된 성적 지식임, ④ 지목된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음, ⑤ 아동의 거짓말일 가능성, ⑥ 아동의 공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 ⑦ 성폭력, ⑧ 과장, 및 ⑨ 최소화가 있다(K. C. Faller,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controversies and best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수정(2010)이 제안한 13점이라는 절단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물론, 이 프로토콜은 이처럼 0점과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정보 수집 및 정보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다.

5.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가. 도구에 대한 설명

이수정(2010)은 이 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서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조숙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배경¹⁰²⁾을 근거로 하여 1세에서 13세 아동의 성적 행동에 대한 부모(예: 어머니 또는 여성 주 양육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2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한국판 성행동 변화 체크리스트의 27문항은 피해아동의 성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CSBI(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¹⁰³⁾의 9가지 범주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0, 1, 2점으로 채점되는데, 성폭력 피해 후 아동의 행동을 부모나 주 양육자가 관찰하여 행동변화가 전혀 없으면 0점, 행동변화가 한 달에 한번이면 2점을 부여한다. 총점 27점 중 14점 이상이면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사용 중인 행동변화평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02) K. A. Kendall-Tackett, L. M. Williams, & D. Finkelhor,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pp. 164-180.

103) N. Willam, Friedrich, PhD. ABPP, 1997

〈표 5-1〉 행동변화 평가 리스트

범 주	문 항
근접성	1. 어머니 또는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
	2. 자신의 몸을 사람이나 물체에 비벼댄다.
	3. 자신의 입을 어머니나 다른 여성의 가슴에 갖다 댄다.
노출성	4. 어른에게 생식기를 보여준다.
	5. 다른 아이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보여준다.
성적역할	6. 여자(남자) 아이가 남자(여자)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자위	7.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만진다.
	8. 손으로 자신의 생식기를 만진다(자위행위).
	9.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생식기를 만진다.
	10. 질이나 항문 속에 물건을 집어 넣는다.
성적불안	11. 어른이 뽀뽀하거나 안아줄 때 화들짝 놀란다.
성적관심	12. 사람을 그릴 때 생식기를 그린다.
	13. 성행위 소리를 낸다(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14. 유혹적으로 말한다.
성적침입	15. 다른 아이의 생식기를 만진다.
	16. 다른 아이나 어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17. 어른의 생식기를 만진다.
	18. 동물의 생식기를 만진다.
	19.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
	20. 다른 아이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바지나 셔츠 등).
	21. 뽀뽀할 때 아이가 자신의 혀를 다른 사람의 입 속에 넣으려고 한다.
22. 어른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바지나 셔츠 등)	
성적지식	23. 성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키스, 애무, 성관계 등).
	24. 또래 아이에 비해 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관음증	25. 벗은 몸의 사람을 훑어지게 쳐다본다.
	26. 알몸 또는 반쯤 벗은 사람의 사진을 훑어지게 쳐다본다.
	27. 알몸이나 성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려고 한다.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 참조하였다고 하는 원래의 아동성행동척도(CSBI)는 36문항 (version 3은 38문항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27문항을 선별한 것이다. 제외된 문항들은 원개발자인 Friedrich(1997)가 성폭력과 관련성이 적다고 분류한 항목들이거나 다른 항목과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어서 굳이 포함될 필요가 없는 항목들(예: 성관계를 훑내 낸다)이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이 도구를 독립된 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이 도구 자체에도 몇 가지 적정성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행동의 증가는 아동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 시에 자주 고려되는 행동변화 중 하나이다(Friedrich, 1997). 그러나 성행동증가가 민감도(sensitivity)는 높지만 특정도(specificity)는 만족스럽지 못하여서, 비피해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다(Faller, 2007). 이와 관련하여 Friedrich 등(1992)은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성행동의 증가가 성폭력 피해의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성행동의 증가를 성폭력의 가능성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성폭력 이외의 스트레스 사건과 가족의 섹슈얼리티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야만 하며, 어떤 행동은 연령에 따라 정상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령을 감안해서 판단해야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김태경·이영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기법에서는 연령이나 성폭력 이외의 스트레스 사건 유무, 혹은 이전의 성행동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성행동 점수 하나만으로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만일 이 도구를 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 영역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동의 연령과 발달특성 및 가족의 성행동 특성을 고려하여야만 하며, 사건 전과 후에 변화된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독립된 평가지표가 아니라 다른 정보들과 통합되어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도구는 성행동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로 함으로써 마치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변화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이는 행동변화에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재경험과 공포, 회피, 악몽, 불안 등을 포함하는 급성스트레스 증상, 공격성, 가성숙, 학업관련문제, 남성공포, 품행문제, 우울증, 배변문제, 수면문제, 자살충동, 해리, 수치심과 죄책감 등이 있다(Faller, Ibid, 2007; Heiman, 1992). 이러한 증상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ren Behavior Checklist: CBCL),¹⁰⁴⁾ 아동용 외상증상체크리스트(Traumatic Stress Checklist

104) T. M. Achenbach & C. Edelbrock,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for Children; TSCC)¹⁰⁵⁾ 등이 있다.

그러나 성행동 증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동변화들은 성폭력 피해아동에게서만 특정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만을 가지고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긍정오류(false-positive)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가자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도구들이 다른 정보(객관적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 등)와 함께 사용될 경우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해 직후에는 성행동을 포함한 행동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대로 피해 직후에는 있었으나 피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폭로 하여 진술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타당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경험이 풍부한 평가자가 피해 전, 피해 후, 피해의 폭로 시, 그리고 피해의 폭로 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서 관찰된 정보를 면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해야만 하므로,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타당하게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6. 타당성 평가

가. 도구에 대한 설명

이수정(2010)은 아동행동·진술분석기법에 포함되는 타당성 평가 도구에 대해 부모의 영향, 면담자의 암시 등을 검토함으로써 진술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아동이 평소 성적 환상을 갖고 있었는지, 진술을 꾸며내는 것인지,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허위 지목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⁶⁾ 특히 타당성 체크리스트에는 아동 진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가 아동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된 영향을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Queen City Printers, 1983.

105) J. Brier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6.

106) 이수정(2010)이 제안한 타당성 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부록4에 게재하였다.

주었는지, 부모가 아동의 증상을 과도하게 인지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의 병력이나 피학대 경험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평가한다. 아동진술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이혼, 재산권과 같은 성폭력 피해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이 때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아동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Faller, 2007). 본 체크리스트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0점, 1점, 2점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점이 낮을수록 아동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아동진술의 타당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점 52점 중 26점 이하이면 아동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도구의 적정성 평가

이 도구에 포함된 요소들은 진술의 타당성 평가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정보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도구를 현 전문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평가는 가용한 모든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 가능하며,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심지어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진술녹화 시점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욱이, 부모의 주입이나 망상, 아동의 환상이나 망상, 오해, 작화 등과 같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임상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문가들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환상적 거짓말', '비고의적 거짓말', '고의적 거짓말'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하물며, 가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술녹화 장면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임상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개인이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타당성 평가는 질적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법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각각의 요소에 0, 1, 2점을 부여하고 합산한 후 총점 52점의 절반에 해당하는 26점 이하이면 아동의 진술이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타당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은 지나치게 아동의 진술 타당성을 높게 측정하게 만들며, 오긍정 오류를 높일 가능성이 짙다. 만일, (평가가 가능하지만 하다면) 아동이

다른 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으나 환상적 거짓말(24번 항목)에서는 2점을 받아 총점이 2점이었다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절단점수보다 매우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진술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타당도 평가는 진술내용 분석 후 해당 진술이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질적'인 과정으로, 진술내용분석 결과와 통합되어야만 한다.¹⁰⁷⁾

셋째,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들이 사용 중인 타당도 평가에는 타당도 관련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수정(2010)은 Faller(2007)가 제안한 타당도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아동의 오해(돌봄 활동을 아동이 오해함), 소통불능(소통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능성이 제기됨), 주모의 주입(누군가의 코칭), 허위지목(지목된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음), 환상적 거짓말(아동의 공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 고의적 거짓말(아동의 거짓말일 가능성), 비고의적 거짓말(과장, 최소화) 등은 타당성 평가 기준이 아니라, Faller가 '최종 해석의 유형'으로 제안한 것이다.

넷째,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수정(2010)이 제안한 26점이라는 절단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전술한 바 있듯이, 진술의 의도성이 명백하다면 나머지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어도 신빙성 낮게 평가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은 오판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107) 아동진술에 대한 종합판단은 진술심리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진술능력평가', '진술내용분석', 그리고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도 평가' 등 세 가지를 모두 함께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① 진술능력을 가진 진술자에 의해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② 진술내용이 신로도 인정에 관한 중요한 진술심리학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③ 진술의 신로도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감소시킬 내부적 또는 외부적 영향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의 분석 작업 결과를 연결해서 특정 진술의 신뢰도에 대한 종합판단을 하기 위한 표준계산모델 또는 일반화된 판단법칙 같은 것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신뢰할 수 있는 진술'과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적인 '기준점(Cut-off-points)'을 설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일이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종선, 앞의 책, 249-250; L. Greuel, S. Offe, A. Fabian, u. a., a.a.O., S. 205).

제3절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보고서의 질적 측면은 분석의 정확도, 다시 말해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끌어낸 전문가의 최종 의견이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한가하는 문제와 맞닿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진위를 알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확률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여 진위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무죄가 ‘사건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재판이 길면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유죄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많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정보와 녹취록 및 녹화물을 수집하여 또 다른 진술분석관련 전문가 2인에게 분석을 의뢰한 후 세 명의 분석가 간 일치율을 검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주어진 정보가 빈약하였고, 녹화물이 존재하는 사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녹취록조차 없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되어서 사실상 재분석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녹취록이 존재하여 진술내용에 대한 분석만이라도 가능한 사례에 대해 진술만을 근거로 할 수 있는 CBCA와 RM 분석을 실시한 후 이전 채점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채점 근거가 제시된 CBCA에 대해 채점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 분석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1. CBCA와 RM의 채점자간 일치도 분석

가. 방법

녹취록이 존재하는 15건에 대해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쌓은 관련 전문가 1인(심리학박사)과 연구자가 함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CBCA와 RM을 실시하였다(이하 ‘전문가B’로 명명함). 재평가는 이전 전문가(이하 ‘전문가A’로 명명함)의 최종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재평가 후에는 전문가 A와 B의 CBCA 분석결과와 최종 의견의 일치도를 검토하였고, 전문가 간 최종 의견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였다.¹⁰⁸⁾

나. 결과

전문가와 평정자간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5-2>에 제시되었다.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CBCA 총점의 평정자간 신뢰도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가 .45, 그리고 RM 총점의 ICC .47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CBCA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 주관적 경험, 가해자 정신상태 추정 및 자신의 진술의심에서, 그리고 RM에서는 사건 중에 피해자가 느낀 감정정보에서 평정자간 일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요소들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한편, 대화의 재현과 자발적 수정은 채점 기준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전문가A가 제시한 근거들을 검토한 결과 대화의 '직접' 인용에만 채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인용에 채점을 한 경우가 빈번하였고, '자발적'인 수정이 어야만 채점이 될 수 있으나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도 채점을 하는 등의 오류가 빈번하였다. 그 밖에도 채점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채점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는 채점 근거의 적절성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2> 채점자 별 CBCA 및 RM의 평정자간 일치도 분석 결과

도 구	항목	채점자	평 균	표준편차	ICCa	p
CBCA	1	A	1.93	.258	-.14	.701
		B	1.73	.458		
	2	A	1.07	1.033	.10	.363
		B	2.73	5.120		
	3	A	2.00	.000	.00	.50
		B	1.60	.507		
	4	A	1.87	.352	-.16	.721
		B	1.73	.594		
	5	A	1.87	.352	.06	.413
		B	.67	.816		
	6	A	1.73	.594	.37	.087
		B	.80	.941		
	7	A	1.13	.990	.53	.021*
		B	.67	.900		

108) 아동행동·진술분석 지침서에서 RM의 마지막 항목을 역채점하도록 하였으므로, 인지적 작동이 강하게 발견되면 0점, 발견되면 1점, 그리고 발견되지 않으면 2점으로 부호화하였다.

도 구	항목	채점자	평 균	표준편차	ICCa	p
	8	A	1.20	.941	.02	.473
		B	1.60	.632		
	9	A	1.87	.352	.07	.401
		B	1.20	.862		
	10	A	.53	.743	.07	.401
		B	.20	.561		
	11	A	1.20	.775	-.11	.657
		B	.20	.414		
	12	A	1.60	.632	.67	.002**
		B	1.33	.816		
	13	A	.60	.507	.60	.007**
		B	.47	.640		
	14	A	.93	.799	.33	.108
		B	.33	.617		
	15	A	1.00	.756	.16	.275
		B	.20	.561		
	16	A	.20	.414	.52	.019*
		B	.13	.516		
17	A	.00	.000	-		
	B	.00	.000			
18	A	.27	.704	.42	.051	
	B	.27	.704			
19	A	.67	.976	.18	.256	
	B	1.87	.352			
총점	A	21.67	3.498	.45	.141	
	B	16.33	5.381			
RM	1	A	1.87	.352	.13	.314
		B	1.67	.488		
	2	A	1.60	.632	.56	.069
		B	1.53	.640		
	3	A	1.80	.414	.15	.293
		B	1.53	.640		
	4	A	1.47	.743	.42	.052
		B	1.67	.488		
	5	A	1.47	.640	.29	.134
		B	1.67	.488		
	6	A	1.40	.737	.74	.001**
		B	1.33	.900		
	7	A	1.93	.258	-.12	.671
		B	1.80	.414		
	8	A	1.27	.884	-.40	.938
		B	1.67	.724		
	총점	A	12.60	2.874	.47	.125
		B	12.87	2.696		

a.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주. A는 경찰청위촉 전문가이며, B는 본 연구진임.

주. 자기비난 요소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점수를 얻은 사례가 없어 통계치가 산출되지 않음.

진술한 바도 있듯이 CBCA와 RM준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집단 별로 CBCA와 RM 점수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5-3>에 제시되었는데,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B의 경우 두 도구의 점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r(15) = .62$, $p < .05$, 전문가A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15) = .15$, n.s.

<표 5-3> 집단별 CBCA 총점과 RM 총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전문가A CBCA	전문가A RM	전문가B CBCA	전문가B RM
전문가A CBCA	1			
전문가A RM	.15	1		
전문가B CBCA	.31	.38	1	
전문가B RM	.38	.31	.62*	1

* $p < .05$

주. A는 경찰청위촉 전문가이며, B는 본 연구진임.

2. CBCA 채점 근거의 타당성 분석

가. 방법

주어진 자료에서 CBCA의 채점 근거가 제시된 사례는 14건(54%)(이 중 녹취록이 있는 사례는 5건임)이었으며, RM은 2건에서 채점 근거가 제시되었다. 채점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B 집단이 전문가A가 제시한 채점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RM은 2건에 불과하였으므로 CBCA만을 분석하였다. B집단 전문가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전문가 A가 0점을 부여한 경우에는 채점 근거가 부재하므로 실제로 진술에 해당 준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적정성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나. 결과

자료 분석 결과가 <표 5-4>에 요약되어 있다.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례는 적절하게 채점된 요소가 2개에 불과하였고 어떤 사례는 9개로 상대적으로 나은 등 채점자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된 사례는 없었으며, 채점 기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채점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도 7건(50%)이었다.

<표 5-4> 채점근거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결과

준거	사 례																												
	1		2		3		7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사례 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19개 중 5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6개가 부적절하였으며, 8개가 평가 불가능하였다. 근거들이 너무 부적절하여서 채점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네. 앉아 있는데 안으면서 만지고 그랬어요. 볼에다가도 살짝”이라는 진술에 대

해 상호작용 2점을 부여하였는데, 이 진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작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례 2〉 19개 중 6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5개가 부적절하였으며 8개가 평가불가능하였다. 조사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부족의 시인으로 채점한다거나 기분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분 나빴다’고 대답한 것을 주관적 경험으로 잘못 채점하고, “머리 상한 오빠만 한잔 마셨어요”라는 진술을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정으로 채점하는 등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채점한 경우가 많았다.

〈사례 3〉 19개 중 2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10개가 부적절하였으며, 7개가 평가불가능이었다. 조사자가 유도질문과 암시질문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이 자주 오도되었으며, 자유진술이 최소화됨으로써 채점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진술에 대해 채점을 하여 점수가 과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조사자 : 잡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 00아 그치? 아래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위로 잡아서 밀치거나 여러 방법이 있지. 어떤 식으로 잡았니? 00이가 너를?

피해자 : 이렇게 위에서 약간 이렇게

조사자 : 이렇게 선생님 잡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 : 아니.

조사자 : 그러면?

피해자 : 이렇게요.

조사자 :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피해자 : 네

조사자 : 그럼 그 날은 입에 혀를 넣고 키스를 했다는 거야?

피해자 : 네

조사자 : 팔을 잡은 상태에서

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상호작용’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점을 부여하였다.

〈사례 7〉 19개 중 7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3개가 부적절하였으며, 9개의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부적절한 채점의 예로 기억부족의 시인을 들 수 있는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르겠다'고 한 것을 기억부족의 시인으로 잘못 채점하였다.

〈사례 13〉 19개 요소 중 6개 요소의 채점이 적정하였고, 8개에서 부적절하였으며, 5개가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조사가 조사자 주도 하에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연하지 않은 진술(2번)에 2점을 부여하였고, 가해자의 행동들만 열거하였는데도 상호작용 2점을 부여하였으며, 대화의 간접인용(예:삼촌이 예전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매일 같은 게 날라 와서 봤는데, 삼촌이 그거 보고 나서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면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기본적인 실수가 자주 나타났다.

〈사례 14〉 19개 중 3개 요소의 채점이 적정하였고, 10개가 부적절하였으며, 6개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의 모든 요소에서 제시된 근거가 심히 부적절하여 채점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점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사례 15〉 19개 중 2개의 채점이 적정하였고, 11개가 부적절하였으며, 6개에서 평가 불가능하였다. 매우 기본적인 실수가 잦았고, 제시된 근거가 너무도 엉뚱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집에 있을 때 TV에서 성폭력 한 것이 나와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10번)'와 주관적 경험에 각각 2점을 부여하였다.

〈사례 16〉 19개 중 6개 요소의 채점이 적정하였고 8개가 부적절하였으며, 7개가 평가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함구증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필답으로 진술의 대부분을 기술하였다. 이 때문에 진술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필답에 종종 많은 점수를 부여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자가 자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추측하여 유도질문을 하여서 상호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진술을 예로 들면서 상호작용에서 2점을 부여하였다.

(상호작용)

조사자 : 할아버지가 수0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피해자 : (창문이라고 씀)

조사자 : 이쪽으로 들어왔어, 할아버지 길로 왔어 발으로 왔어?

피해자 : (발으로 라고 씀)

조사자 : 할아버지가 왜 하필 창문으로 왔을까?

피해자 : (싫어요 라고 씀)

〈사례 17〉 19개 중 9개에서 적절하게 채점하였고, 8개에서 부적절한 채점을, 그리고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2개였다. 부적절한 채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정확하게 묘사한 정보에서 ‘아버지가 성기를 잡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짜증이 나서 무슨 헛소리야 하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가해자의 요구 때문에 짜증이 나서 ‘헛소리 한다’고 화를 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의 채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또한, 외적 사실 연합에서 ‘구체적인 성적 행위와 관련된 묘사가 나타남’을 근거로 기술하였는데, ‘외적 사실연합’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성적 행위 관련 묘사’는 이 준거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사례 19〉 19개 중 적절하게 채점된 요소가 6개였고 6개가 부적절하게, 그리고 7개가 평가불가능이었다. 조사자의 직접질문에 대해 대답한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채점에 곤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가 잦았다. 간접적인 대화 인용에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암시 질문에 대해 추론해낸 진술에 대해 관련된 외적 연합으로 점수를 주는 등 채점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채점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오류도 많았다.

〈사례 20〉 19개 중 적절하게 채점된 요소가 2개였고, 11개에서 부적절한 채점이 발견되었으며 6개가 평가불가능으로 분류되었다. 조사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진술이 매우 적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실수가 가장 많았으며, 상호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고 2점을 준다거나 대화의 간접인용에 대해 2점을 주는 등 채점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채점한 경우도 많았다.

〈사례 21〉 19개 중 적절하게 채점된 요소가 9개였고, 6개에서 부적절한 채점을, 그리고 4개가 평가불가능이었다. 녹취록은 없으나 준거1의 근거로 녹취록의 상당부분(11쪽)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볼 때 조사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이지 않으면서도 통일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증거 2에서 0점을 주었고, 부가적인 세부정보(9번)도 매우 풍부한데 0점을 부여하였으며, 기억부족의 시인도 자주 발견되었으나 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조사자의 직접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주관적 감정경험과 가해자 귀인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사례 22〉 19개 요소 중 2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8개가 부적절하였으며 9개가 평가 불가능하였다. 조사자의 직접적인 질문 이후에 나온 진술을 자유진술처럼 채점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사례 23〉 19개 중 7개의 채점이 적절하였고 3개가 부적절하였으며 9개가 평가 불가능하였다. 조사자의 직접적인 질문 이후에 나온 진술에 대해 채점하는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다. 근거를 제시한 후 0점으로 채점하는 일이 있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하여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보를 예로 기술한 뒤 부가적인 세부묘사 2점으로 채점하기도 하였다.

3.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례별로 최종 판단결과를 정리해보면(표 5-5)와 같다. 분석 결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사례가 10건(38%)이었고, 높다고 판단된 사례가 15건(58%), 그리고 결과서의 전반부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썼다가 후반부에는 '의문스럽다'고 기술하여 최종 판단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례가 1건(4%)이었다.

한편, 분석결과와 무관하게 58%에서 피해를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42%의 사례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유창한 편이어서 적어도 현재 주어진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전문가B 집단에서도 2건을 제외한 24건(92%)에서 신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잠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정보가 부족하므로 전문가B의 최종판단은 모두 보류되었음)(나머지 2건은 사건 발생은 실재일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동기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채점 정확성이나 활용된 도구의 적합성 등과 같은 쟁점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타당도 평가결과를 최종 의견 기술 시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표 5-5〉 사례별 최종 판단 결과

사례 번호	타 당 성		최종판단 (신빙성)
	총점	내 용	
1	0		높음
2	1	비고의 거짓말	높음
3	0		매우 높음
4	7	부모영향(부모와 가족구성원이 사건관련 자기 생각과 느낌을 강요, 피해아동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진술), 부모주입(부모가 아동에게 특정진술을 강요,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연습한 흔적이 있음), 면담자 암시, 진실왜곡여부(비고의적 거짓말)	있다/의문스럽다
5	8	부모영향(부모가 사건관련 자기 생각과 느낌을 강요, 피해아동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진술), 부모주입(부모가 아동에게 특정진술을 의식적으로 강요, 부모가 특정 진술을 요구함, 부모로부터 훈련받거나 연습한 흔적이 있음), 면담자 암시	높음
6	0		매우 높음
7	3	부모망상, 집단영향, 소통불능	높음
8	0		높음
9	0		높음
10	0		매우 높음
11	0		매우 높음
12	0		매우 높음
13	3	면담자 암시, 소통불능, 비고의적 거짓말	매우 높음
14	1	부모영향(가족구성원이 사건과 관련한 자기생각과 느낌을 강요)	높음
15	1	아동의 정신상태 관련 진위여부(오해-부모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오해함)	높음
16	0		높음
17	4	부모영향(부모 및 가족구성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아동에게 강요), 부모오해과잉반응(사건과 관련없는 신체적 증상을 성폭력으로 오해), 부모망상(부모의 피학대 경험으로 인해 아동의 경험을 지나치게 부풀림)	높음
18	0		높음
19	0		매우 높음
20	0		매우 높음
21	0		높음
22	0		높음
23	0		높음
24	1	부모영향(부모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아동에게 강요)	매우 높음
25	1	부모영향(피해아동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진술)	매우 높음
26	3	부모영향(부모가 사건관련 자기 생각과 느낌을 강요), 아동의 정신상태 관련 진위여부(소통불능)	높음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11건(42%)에서 타당도 관련 지표에서 의문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4번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신빙성이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한편, 전문가B 집단에서는 4번 사례의 진술신빙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만일, 부모의 코칭이나 암시, 망상, 아동의 오해(부모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오해), 진술강요, 아동의 비고의적 거짓말 등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동의 진술 신빙성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그 밖에도 분석 보고서의 적정성을 걱정스럽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호자 면담의 부재

보호자 면담을 실시한 사례가 14건(54%)에 불과하며, 그 중 일부는 직접 보호자를 면담한 것이 아니라 진술 조사 중에 보호자가 언급한 것을 참조하여 보고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짙게 보여 진다. 그러면서도 26건 중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면담이 이루어진 사례가 14건(54%)이었다. 보호자 면담 및 가용한 모든 정보 수집 후에도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인데,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녹화 자료만을 토대로 진술타당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나. 사례에 맞지 않는 내용의 보고서

주어진 자료의 특성상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 중 4건은 강간 성립에 필요한 몇몇 요건이 중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즉, 이런 사례들에서는 CBCA나 RM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항거능력, 심리적 측면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였다. 위의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서, 사례의 특성에 맞추어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수치화된 보고서는 실제 수사나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다. 지도감독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 보고서 중 지도감독을 받은 사례가 13건(50%)이었고 그 중 12건이 같은 지도감독자였다. 그러나 이들의 채점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같은 지도감독자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나머지 1명의 지도감독자는 경장 직급을 가진 경찰이었는데, 전문성도 의문스럽지만 진술조사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자신이 조사한 사례의 진술신빙성분석 결과에 대해 직접 수퍼비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사료된다.

라. 소속 및 직위표기에 관한 내용

모든 분석가들이 외부 위촉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속을 원스톱지원센터로 기재하였고, 직위를 '조사관'으로 기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이 마치 원스톱에 근무하는 조사관인 경찰관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또한, 정작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해주는 분석가의 자격사항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제4절 진술조사의 적정성 분석

진술한 바 있듯이, 진술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적정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진술내용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오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SVA를 수정·보완했던 Steller와 Köhnken(1989)이 제안한 타당도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녹취록이 존재하는 15건에 대해서 조사관련 요소들을 검토하였다.¹⁰⁹⁾ SVA의 타당도 체크리스트에는 심리적 요소, 조사절차적 요소, 동기적 요소 및 수사상 의문점이 포함되며, 이 중 조사와 관련된 요소에는 암시적, 유도적, 혹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하기와 전반적인 조사의 부적절성이 포함된다.¹¹⁰⁾

109) 녹화영상물이 부재하여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조사 시의 분위기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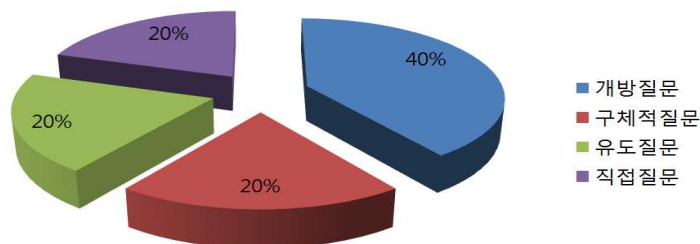
110) 타당도 평가의 원리 및 구체적인 요소는 박종선, 앞의 책, 229 또는 A. Vrij, op. cit, p. 10 참조.

1. 질문의 적정성 분석

이 요소는 면담자가 아동에게 암시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식으로든 아동에게 압력을 주지는 않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아동이 유도질문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 아동이 진술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면담이 암시적이고 유도적이었거나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당 면담에 대한 진술타당도 분석이 곤란해진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방적인 촉진질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한 경우가 40%였으며, 구체적질문과 유도질문 및 직접질문 단계에서 진술한 경우가 각각 20%였다. 조사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질문유형별 진술을 분석한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에 의해 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적게는 6%에서 높게는 49%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수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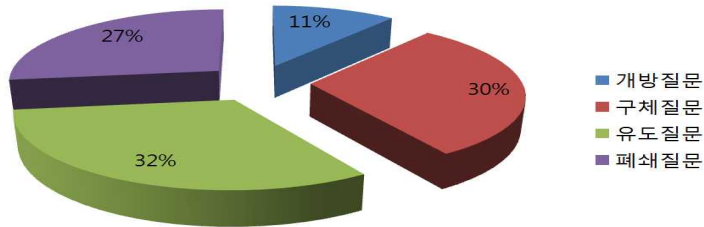
〈그림 5-1〉 조사자의 질문 유형



그러나 피해에 대한 진술 이후의 조사자 질문형식을 분석한 결과 개방적 촉진질문은 11.3%에 그쳤으며, 구체적 질문 31%, 유도질문 32%, 그리고 직접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이 27%로 나타났다. 2건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한 이후에 구체적 혹은 유도적이거나 폐쇄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간에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후에는 곧바로 유도질문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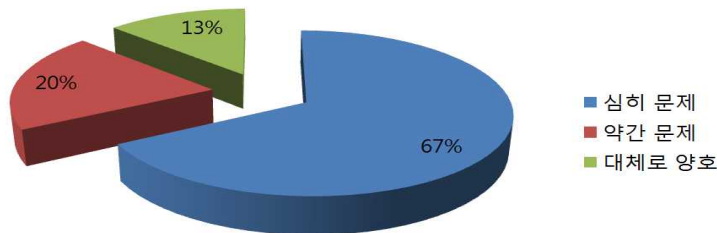
111) 김태경, 이영호, 2010; Orbach, Hershkowitz, Lamb, Esplin, & Horowitz, 2000.

〈그림 5-2〉 피해보고 이후의 추적 질문 유형



질문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의 태도만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적당한 수준의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등 적절한 태도를 사례가 5건(33%)이었고, 과도하게 친절하나 은근히 강압적이며 자유진술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5건(33%), 강압적인 사례 4건(27%),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한 사례 1건(7%)이었다. 조사자의 질문유형과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의 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례가 10건(67%)이었으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3건(20%)이었고,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된 사례가 2건(13%)이었다.

〈그림 5-3〉 조사의 적정성



문제시 된 행동들에는 자유진술을 허용하지 않고 유도질문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조사자가 가해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부적절한 선택을 강요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고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 추측 강요, 조사의 흐름을 벗어난 엉뚱한 질문 반복, 피

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해부학적 인형을 주고 재현 요구, 신뢰관계 동석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개입실패,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등이 있었다. 또한, 조사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정보만을 수집하고 조기에 조사를 마침으로써 부득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도 4건(27%)이었으며, 동석한 상담원이나 경찰청 위촉 분석가가 조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례도 4건(27%)이었다.

2. 전반적인 조사의 적절성 분석

암시 이외의 여러 요소들이 면담의 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종종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에 '모른다고 해도 좋음'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들은 답을 모르는 경우에 조차 모른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허위 진술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면담자는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아동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규칙에 대한 설명 누락

주어진 자료 15건 중에서 조사의 규칙을 설명한 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이었고, 그나마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쳤는데, 정작 조사자는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진술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추측을 독려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나.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

녹취록이 존재하는 사례 중에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한 사례는 1건이었고,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해부인형을 도입하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한편, 비록 녹취록은 없지만 분석가가 근거로 제시한 진술의 조각들을 검토해볼 때 전체 26건 중 5건(33%)에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3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부인형을 제공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다. 발달적으로 부적합한 용어의 사용

피해자가 생식기의 명칭을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명명하면, 조사자가 이를 ‘잠지’, ‘음부’ 등으로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다(조사자는 고쳐주기보다 오히려 아동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함). 또한, 사정, 삽입, 발기 등의 단어를 조사자가 먼저 사용하면서 삽입과 사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6건(40%)으로 높게 나타났다.

라. 조사 과정의 문제

보호자가 부적절할 정도로 조사에 끼어드는데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보호자를 거의 조사자로 활용한 사례가 2건이었으며, 신뢰관계자를 대신하여 동석한 상담사가 침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례 1건, 그리고 전문가가 부적절할 정도로 조사에 참여한 사례 1건이었다.

제5절 분석도구의 개량을 위한 제언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조사의 계획, 실행, 조사 이후의 심리적 개입 등에 조력하도록 하는 제도는 매우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행동·진술분석제도에서는 진술조사 내용만으로는 평가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진술신빙성 분석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분석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며,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평가도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평가도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리엔테이션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6개의 단답식 항목만으로는 아동의 진술능력이라든지 언어능력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신뢰관계인에 대한 1회성의 만남과 분석에 그치고 있다. 1회성의 만남만으로는 아동의 발달과정과 진술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또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에 걸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장애인의 발달능력을 파악한 후 이를 조사자에게 전달하여 아동의 정신연령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¹¹²⁾.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연령별, 발달정보별, 진술능력별, 지적 장애별 등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침이 작성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부모면담에 대한 지침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조사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과 경찰조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진술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아동과의 초기만남은 매우 중요하며¹¹³⁾, 오리엔테이션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아동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정보는 조사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정보이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미리 아동 및 보호자와 면담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조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전달하여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리엔테이션과정에서 확보되는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진술능력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건을 경험할 때 인지가 이루어진 과정, ② 사건 당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한 기억능력의 정도, ③ 기억을 회상하여 끄집어 낼 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개념이다¹¹⁴⁾. 이러한 진술능력에 대한 감정평가는 구성요건과 개인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가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① 진술한 아동의 개인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피해아동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인지하는

112)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방법은 박종선 앞의 책, 2008, 126-130면 참조.

113)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이 법정에서 출석하기 전에 법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는 책자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다(B. L. Bottoms, & G. S. Goodma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ildren's testimony*,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1996, pp. 260-268).

114) L. Greuel, S. Offe, A. Fabian, u. a., *Glaubhaftigkeit der Zeugenaussagem München: Psychologie Verlags Union*, 1998, SS. 89-90; 박종선, 앞의 책, 166-167면.

것이 가능하였는가?

- ㉠ 진술한 아동은 문제의 사실관계를 기억해 낼 능력이 있는가?
- ㉡ 진술한 아동은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 진술한 아동은 체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아가 해당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사건을 경험할 당시에 이에 대한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시나 난청과 같은 장애인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교정장치(안경이나 보청기 등)를 착용하였는가, 발달장애가 있는가, 정신질환이 있는가, 성격장애가 있는가, 기질적 뇌기능 장애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도 감정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은 타당도평가 도구와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CBCA는 3단계로 구성된 SVA중 하나이다. 제1단계는 절차적인 측면으로 진술자와 조사자 간의 적정한 절차로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면접과정이며, 제2단계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CBCA에 의한 진술분석이며, 제3단계는 분석된 결과에 대해 다른 외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이다. 따라서 CBCA와 타당도평가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도구이므로 CBCA 분석 후 반드시 타당도 관련 변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고서에서는 결론에 대해 신빙성의 유무에 대한 것과 이에 대한 약간의 언급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의 절단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부정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9개 요소의 총점을 산출하여 절단점수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진술능력 발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준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성 평가(RM)의 도구를 아동과 장애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동과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상당한 준거들이 CBCA와 중첩되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도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이다.

넷째,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부적절하다.

이 프로토콜은 전문가들이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정보들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본 도구를 개발한 Faller의 목적이다. 따라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자문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도구를 사용한다면, 아동이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때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충분히 탐색하여 타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점 척도의 기록이 아닌 당초 제안자의 의견인 5점 척도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의 도구는 성행동척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도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를 '성행동척도'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도구는 독립된 평가지표가 아니라 다른 정보들과 통합되어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본 도구를 성폭력 가능성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보고서 작성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성폭력 이외의 스트레스 사건 유무, 이전의 성행동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성행동 점수 하나만으로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만일 이 도구를 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 영역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동의 연령과 발달특성 및 가족의 성행동 특성을 고려할 것과, 사건 전·후에 변화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이 도구에 의한 평가는 반드시 임상심리학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타당성평가는 CBCA와 통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진술분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첫째 아동의 연령과 정신적인 성숙도를 참작하고, 조사자가 행한 질문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등을 참작하여 아동이 진술한 것에 대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둘째는 장시간에 걸친 조사자의 다양한 면접조건하에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의 요소가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는가와 같이 구체적인 타당도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즉 적절절차를 통해 확보된 아동의 진술은 CBCA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후, 분석한 결과에 다른 '외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타당도평가이므로 반드시 CBCA 결과와 통합되어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타당성평가는 CBCA에 의한 진술분석의 결과가 완료되고,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성평가는 관련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진술녹화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가용한 모든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 평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당도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의 주입, 아동의 오해, 소통불능, 허위지목, 환상적 거짓말, 고의적 거짓말, 비고의적 거짓말 등은 타당성평가 기준이 아니므로 평가요인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¹¹⁵⁾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장점과 단점 및 한계점을 적절히 이해하고 사례의 특성에 알맞게 활용하며 각 도구들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타당하게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이다. 예컨대,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 없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의 미숙함이 자주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청은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고무시키고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115) 굳이 타당성 평가를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에는 수년간의 임상경험으로도 평가하기 힘든 ‘망상’, ‘작화’, ‘공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진술과 행동에 대한 분석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혹은 피해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특정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송동호·정성훈 외, 앞의 보고서, 2010, 참조).

제6장 판사·검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의 과정과 방법

설문 대상의 범위는 2011년 10월 21일 현재까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검사들이다. 즉, 설문대상 판사의 경우 전원이 현직 전담판사이며, 검사의 경우에는 1명만이 전직 전담검사였고 나머지 전원은 현직 전담검사이다.

설문지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판사들의 경우에는 아동·장애인 전담 재판부에 소속된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검사들의 경우에는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협조를 얻어 판사들 보다는 훨씬 많은 18명의 응답을 받았다. 검사의 설문응답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조직적인 설문지 배포와 함께 각 검사들의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설문 응답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준 결과로 보여 진다. 조사는 2011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전자 메일 응답과 직접 방문을 통한 심층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10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1〉 [판사] 설문 문항의 구성

구 분	조 사 내 용
기본적인 인적사항	· 성별, 연령, 근무년수, 전담검사경력,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
전문가제도의 기여정도	· 2차 피해방지 ·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 아동의 인권보호 · 아동진술의 신뢰성 보장
전문가의견제도가 유무죄를 결정 기여정도	· 매우크게 기여 · 대체로 기여 · 별로 기여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기여 못함 · 기타
<p>보고서 항목 중 유·무죄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항목(중복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진술능력 · CBCA(준거기반내용분석)에 의한 점수 · RM(사실성평가)에 의한 점수 · 성폭력발생가능성 평가 · 성폭력 피해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 타당성평가 · 전체적인 종합의견 · 기타
<p>전문가 보고서가 유·무죄 결정에 기여 못하는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학위 · 전문가의 전공 · 전문가의 경험 · 전반적인 조사의 부적절성 · 수치화에 대한 불신 · 준거의 해석능력에 대한 불신 · 기타
<p>보고서에 '신빙성 애매함' 또는 '신빙성 없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크다 · 대체로 영향을 받는 편이다 ·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p>전문가의 '학력' 과 '진술분석 경험' 의 중요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 진술분석경험
<p>학력의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소지자 ·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석사학위소지자 ·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타
<p>진술분석경험의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건 미만 · 10건 이상 - 20건 미만 · 20건 이상 - 30건 미만 · 30건 이상 - 50건 미만 · 양적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 기타
<p>행동·진술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만족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제2절 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1. 설문 응답 판사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설문에 응답한 판사 7명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명(57.1%)이었고 여성이 3명(42.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명(57%)이었고 40대가 3명(43%)으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4.0세였다. 근무경력은 평균 11.4년(범위=2.5년~20.5년)이었으며, 3년 이하가 1명(14%), 3~5년 1명(14%), 5~10년 1명(14%), 10~19년이 2명(28%), 그리고 20년 이상 1명(14%)이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담판사로써의 근무 경력은 평균 1.2년(범위= 6개월~3.5년)이었다. 1년 이하가 5명(71%)이었고 1.6년 1명(14%), 3.5년 1명(14%)이었다. 이들이 관여한 재판은 10건 미만이 1명(14%)이었으며, 10~19건 2명(28%), 20~29건 1명(14%), 30~39건 1명(14%), 그리고 40건 이상 2명(28%)이었다.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판사들의 전반적 평가

가. 유무죄평결의 결정여부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전문가 보고서가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대체로 기여한다는 견해가 6명(85%)이었으며, 1명은 기타의견이었으나 별도의 의견을 기술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중복선택임), 그 결과 CBCA에 의한 점수가 4명(57%)으로 나타났으며, RM이 3명(43%), 전체적인 종합의견 2명(29%), 전문가의 질적인 분석내용 2명(29%), 아동의 진술능력 1명(14%), 타당성 평가 1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적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은 다분히 탐구적인 성격이 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도출된 분석도 잠정적인 결론에 지날 수 밖에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검사들의 분석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검사에 비해 판사들이 보고서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대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한 응답자

가 몇몇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더욱 인상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응답자 편향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판사와 검사 모두 이 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에 설문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무죄판결시 제출한 보고서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작성된 보고서인지 검찰청에서 분석한 보고서인지, 법원 자체에서 의뢰한 분석인지에 대한 명백한 구분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분석의 질과 무관하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거나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사건이 기소되었으며, 이 경우 유·무죄 판단보다는 아동의 진술양상과 행동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가 판단에 부가적인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 ‘신빙성 없음’ 또는 ‘신빙성이 애매함’을 결론으로 하는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한 사항

전문가 보고서의 결론이 ‘신빙성 없음’ 또는 ‘신빙성이 애매함’으로 도출되었을 때, 이들의 의견에 판사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향을 받는 편’이 57.1%,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28.6%,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 14.3%의 순이다. 본 응답의 결과 전문가의 보고서가 판사들에게 신빙성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진술신빙성 여부 판단의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의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전문가 참여제가 ‘2차 피해 방지’에 있어서 매우 크게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인 판사는 71.4%로 나타났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판사는 매우 크게 기여한다는 입장이 57.1%, 대체로 기여한다는 입장이 42.9%로 나타났다. 또한

본 제도가 아동의 인권보호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판사는 대체로 기여한다(71.4%), 매우 크게 기여(14.3%), 별로 기여 못함(13.3%)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결론들에 대해서는 표본자료의 수집은 저조하였으나, 설문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결론은 매우 소수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판사와 심층면담을 통한 판사들이 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며 본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리엔테이션의 철저한 실시와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진술녹화과정에서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장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둘째, 반드시 보호자 등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이 왜곡된다거나 또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 등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진술분석전문가들은 대부분 심리상담을 전공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의 보고서는 법관들에게 신뢰도를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사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 또는 법원과 연계된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아동진술관련 영역 전문가의 역할모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모델을 근거로 한 전문가 양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나이,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평가척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나이가 많은 아동이 신빙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빙성이 판단불능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맞는 진술능력과 표현능력에 따른 평가척도와, 장애정도에 따른 진술능력과 표현능력에 따른 평가척도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진술에 대한 전문가와 장애인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리 배출이 필요하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 다른 관계로 이에 대한 분석 또한 달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¹¹⁶⁾. 예컨대 전공, 이수과정, 이수연수, 실제 진술을 분석한 경험 횟수, 자격증 유무 등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종합 의견에 대한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검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1. 설문 응답 검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본 조사는 전국에 있는 아동·장애인성폭력 전담검사중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8명중 2011년 10월 25일 현재 17명은 전담검사이고 나머지 1명만이 바로 직전 전담 검사였다. 본 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2〉 [검사] 설문 문항의 구성

구 분	조 사 내 용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근무년수, 전담검사경력,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
전문가제도의 기여정도	· 2차 피해방지 ·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 아동의 인권보호 · 아동진술의 신뢰성 보장
전문가의견이 공소제기 결정의 기여정도	· 매우크게 기여 · 대체로 기여 · 별로 기여 못함 · 전혀 기여 못함 · 기타
보고서 항목 중 공소제기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항목	· 아동의 진술능력 · CBCA(준거기반내용분석)에 의한 점수 · RM(사실성평가)에 의한 점수 · 성폭력발생가능성 평가

116) 이와 같은 요구는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 타당성평가 · 전체적인 종합의견 · 기타
전문가 보고서가 공소제기에 기여 못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학위 · 전문가의 전공 · 전문가의 경험 · 전반적인 조사의 부적절성 · 수치화에 대한 불신 · 증거의 해석능력에 대한 불신 · 기타
보고서에 '신빙성 애매함' 또는 '신빙성 없음' 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크다 · 대체로 영향을 받는 편이다 ·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수사결과와의 일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일치하는 편이다 ·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 별로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전문가의 '학력' 과 '진술분석 경험' 의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 진술분석경험
학력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소지자 ·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석사학위소지자 ·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타
진술분석경험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건 미만 · 10건 이상 - 20건 미만 · 20건 이상 - 30건 미만 · 30건 이상 - 50건 미만 · 양적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 기타
행동·진술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만족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본 조사에 응한 아동·장애인성폭력 전담검사 18명의 성별, 연령, 검사경력,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담검사 근무연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명(39%), 여성이 11명(61%)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6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미만이 22%, 40대 이상은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4.6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7세(범위 = 27세~51세)였다. 20대 후반이 4명(22%)이었고, 30대가 12명(67%), 그리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명(각각 6%)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무 경력은 4.7년(범위 = 7개월~20년)이었으며, 1년 이하가 3명(17%), 1년 초과~3년 이하 6명(33%), 3년 초과~5년 이하 3명(17%), 그리고 5년 이상이 6명(33%)이었다. 성폭력 전담 검사로써의 근무 경력은 평균 1.29년(범위 = 1개월~6년)이었다. 이들 중 6개월 이하가 6명(1개월이 4명임)(33%)이었으며, 6개월 초과~1년 이하가 4명(22%), 1년 초과~3년 이하 7명(39%), 그리고 6년 이상이 1명(6%)이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담당 한 경험은, 10건 미만이 10명(56%)이었으며, 10~19건 3명(17%), 20~29건 1명(6%), 30~39건 1명(6%), 40건 이상 2명(11%), 그리고 기타가 1명(6%)이었다.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검사들의 전반적 평가

가. 공소제기 결정여부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공소제기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기여 한다'는 응답이 13명(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크게 기여' 3명(17%)으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이 공소제기결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총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별로 기여 못함'과 '전혀 기여 못함'이 각각 1명(각각 6%)으로 12%의 정도가 기여 못하는 의견으로 볼 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소제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공소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88%)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응답자 편향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에 설문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검사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서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작성된 보고서인지 검찰청 자체에서 분석한 보고서인지에 대한 명백한 구분 또한 없었다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번 조사의 한도 내에서 그와 같은 잠정적 결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는 상당히 높은 욕구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으로는(중복선택임) '아동의 진술능력'이 9명(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9명(50%), 'CBCA에 대한 점수' 4명(22%), RM 2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발생가능성 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반면, 공소제기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으로는, '보고서 작성자의 증거 해석 능력에 대한 불신' 2명(11%), '전문가의 경험' 1명(6%), '전반적인 조사의 부적절성' 1명(6%)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의 학위, 전공, 수치화에 대한 불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견은 없었으나, 연구진이 직접 만난 심층면담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 설문과 심층면담과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신빙성 없음' 또는 '신빙성이 애매함'을 결론으로 하는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한 사항

전문가보고서가 '신빙성 없음' 또는 '신빙성이 애매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검사의 공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대체로 영향을 받는 편이 44%로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나 77%가 보고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검사의 ‘수사결과의 심증’과 ‘전문가 보고서 결과’의 일치도에 대한 반응

검사들의 공소제기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보고서와 검사가 수사한 결과에 대한 심증에 대한 일치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 15명(83%), ‘별로 일치하지 않는 편’ 2명(11%), ‘매우 일치한다’ 1명(6%)의 순으로 나타나 일치한다는 응답이 16명(89%)로 매우 높았다.

이 결과 역시 사례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선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치하는 편이 89%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본 제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

전문가의 보고서가 공소제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88%로 매우 높은 응답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경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으로는 아동의 진술능력이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신빙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애매한 경우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77%이며, 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한 심증과 전문가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의 일치도에 대해서도 일치하는 편이 89%로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결론들에 대해 표본자료의 수집이 판사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으나 설문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결과에는 역시 차이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 결론은 소수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며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의 진술분석에 대한 축적된 경험으로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경력을 비추어볼 때 과연 그들이 제시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의견 등을 기술 하고 있었으며, 또한 경찰청 전문가의 보고서가 재판에서 배척되었다고 기술한 응답자도 몇몇 있었다. 슈퍼비전에 통한 질적 분석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치화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다¹¹⁷⁾. 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 사법경찰관의 의도에 맞추어 그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치화된 데이터에 의해 '신빙성 있음', '신빙성 없음', '신빙성 애매함'과 같은 확실적인 의견내용은 오히려 보고서를 신빙할 수 없는 경향도 있다.

셋째, 질적 분석이 요구된다. 전문가가 분석한 보고서가 거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가의 의견과 배치되어 전혀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분석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으로 거듭나야하는 수사 환경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객관성을 담보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문가의 윤리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객관성을 확보한 전문가의 의견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동과 장애인의 행동과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오리엔테이션과정에서 충분한 진술능력과 장애정도에 대한 설명의 누락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여 진다.

제4절 아동·장애인 전담 판사·검사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

2010년도 첫 시행된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담당 판사·검사들의 평가에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

첫째, 본 제도의 취지인 2차 피해 예방의 기여도 조사결과 판사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검사의 경우 7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117) 설문조회의 의견에서 공소제기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에 수치화에 대한 불신을 문제제기한 검사는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을 위한 의견란에 수치화된 데이터 때문에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몇몇 있었다.

둘째, 아동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대한 기여도 조사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판사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검사의 경우 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문가 참여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판사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검사의 경우에는 88.9%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을 통해 본 제도가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아동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아동의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유·무죄 결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85%로 나타났다. 공소제기결정여부에는 8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의 아동진술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고뇌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차와 2년차인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판사와 검사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으며 나아가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정도가 심히 우려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평가가 예상보다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의 전문가 참여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첫째, 전문가의 축적된 진술분석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판사들이 검사들에 비해 좀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전문가로 위촉받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양성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은 경우의 많은 부분이 전문가의 경험과 재교육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도구에 의한 분석보고서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보다는 수치화·정형화된 판단과 의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소제기의 결정여부라든지 증명력의 판단이 결코 절단점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능력이나 인지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왜 그러한 진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있다', '없다'로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아

나라 사실을 발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문가 참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문가의 축적된 진술분석의 경험과 재교육 및 이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제7장 결론 및 발전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아동·장애인성폭력 전문가 참여제는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조회」의 도입·시행 이후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 및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시행 2년차 평가작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전문가 참여제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이해와 실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개별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판사와 검사들의 의견조사방법도 아울러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참여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전문가 참여제 시행의 취지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그 동안의 아동진술의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2.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문가에 대한 자격을 살펴본 결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2011년도 제1단

계 전문가의 경우 96%가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높은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판사와 검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자격을 중요시하는 의견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법정에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험에 대한 의견은 판사와 검사의 경우 및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은 심히 염려스럽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가 충분한 훈련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경찰청 전문가의 보고서가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10건 미만의 진술분석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법정 증언을 하여 오히려 공소유지에 해가 된 경우도 있었다. 적어도 진술분석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분석경험이 30~50건 이상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석사학위소지자이면 족하다는 의견이었음), 현장에서의 오래된 경험이 그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슈퍼바이저에 의한 슈퍼비전을 통한 재교육으로 법원에서 의뢰하는 전문가들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에 작성된 보고서만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한 관계로 2011년도에 작성되고 있는 보고서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2010년도에 운영하고 있던 분석도구의 개량을 위한 평가의견을 제4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진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진술분석도구인 '준거기반내용분석' 그리고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평가' 등 세 가지를 모두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물론 종합판단을 하기 위한 표준계산모델이라든지 일반화된 판단법칙을 사용하는 '절단점수(Cut-off-points)'를 설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일이란 것도 언급하였다. 또한 성폭력 발생가능성 평가와 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도구 역시 진술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도구는 신빙성 판단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판단도구로 계속하여 쓰고자 한다면 전문위원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에 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임상심리학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발전방안

1.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

가. 자격과 경험

전문가의 학력과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에 대한 설문조치 결과, 판사와 검사의 경우 학력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무하였다¹¹⁸⁾.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법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에서의 진술분석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사전 경험으로의 진술분석 건수에 대해 판사는 30-50건 6명(86%), 검사는 30-50건 8명(50%)로 나타났다¹¹⁹⁾. 이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유·무죄판결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여부에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50건의 분석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수치는 판사들이 검사들에 비해 좀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18) 판사의 경우 1명만이 '학력과 경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의 경우에는 2명만이 '학력과 경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의 정도로는 석사학위소지자면 족하다는 의견이었다.

119) 상대적으로 증거법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이완규·백승민 번역, 앞의 책, 268면). 미국의 법원에서도 학위 없이 경험만으로 전문가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전문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 전문가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 어느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진술분석 경험은 몇 건이나 했는지, 동료 간의 오차분석은 있었는지 등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2절의 전문가의 자격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격으로는 학력은 중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석사학위의 소지자이면 된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진술분석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어도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양적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의 향상을 갖춘 후라야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단계의 전문가 수준을 법원과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1단계의 전문가에 대해 심화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2단계의 질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될 것이다.

나. 충분한 준거설명을 통한 결론의 도출

판사와 검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동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치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사례가 적어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설문을 통한 응답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있었으며, 판사와 검사를 직접 만나 심층면담한 결과에서도 절단점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절단점수에만 의존하는 분석보고서만으로는 아동·장애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치화된 점수의 결과에 대해 각각의 준거를 기준으로 충분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1인에 의한 의견 제출의 방법보다는 2인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오차비율의 최소화

형사사건중 성폭행 사건의 진술평가에 관하여 1900년부터 1930년 동안 90%이상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심리학자가 평가하여 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판단을 하였으나, 법원은 전문 심리학자에게 법정외의 문을 개방하기를 극도로 꺼려하였다(U. Undeutsch). 이 후 1970년대 미국에서 연구되어졌으나 '오류가 많다'(Loftus, 1979)는 이유로 독일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는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

려야 하나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부정적인 의심을 가지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¹²⁰⁾.

전문가들이 아동의 성폭력 주장과 관련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그 오류를 범할 경우, 그것이 피해아동 혹은 부모에게 미치는 여파는 실로 엄청나게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오차비율의 범위와 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S. Herman(2010)은 법정에서 아동성폭행 사건을 직접 평가한 110여명의 전문가(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들의 오차율을 추정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 긍정적·부정적 오차의 중간 추정값은 각각 0.18과 0.36으로 나타났다. 추정의 오차율은 평가 대상자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erman, S., & Freitas, T. 2010). 이러한 오차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라.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1단계 전문가들은 짧은 기본과정과 개별실습시간을 통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진술조사에 참관하게 된다.¹²¹⁾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십 건의 진술조사에 참관하고 이를 평가한 후, 슈퍼바이저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받고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명확하게 각각의 증거에 의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필요로 한다. 즉, 실제 인터뷰 녹화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해야만 전문가 의견제도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행

120)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영상녹화물+진술분석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진술의 신뢰성이 다투어지자, 법원이 전문심리위원회에 진술분석을 의뢰하였고, 상반된 두 진술분석 중 법원 전문심리위원회의 진술분석이 채택되는 사례(수원지방법원 선고 2009고합557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반된 진술분석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원스톱지원센터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초기시작단계부터 축적된 경험으로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 5건 미만의 임상경험과 짧은 교육만을 받고 분석을 한 결과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측의 변호인에게 덤미를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설문조회의 의견에 포함되어 있다.

동·진술분석보고서도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들을 조사하면 전혀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고서와 상이한 처분을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¹²²⁾

물론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면담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는 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마. 형사절차의 이해

행동·진술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고서는 법관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없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아동의 진술이 전문가에 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의 전단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형사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사관과 전문가의 공조를 위한 매뉴얼 작성

가. 매뉴얼의 필요성

전문가 의견조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동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와 함께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피해에 대한 조사는 아동의 진술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다. 더욱이 목격자도 없고, 보강할 수 있는 증거도 거의 없으며, 설령 산부인과 의 진료기록이 있다하더라도 아동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유도 또는 반복된 질문으로 아동의 진술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거나 조사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일정정도 지휘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문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122) 검사작성 설문지 회신 결과에서 발췌하였음.

어렵게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나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¹²³⁾. 이러한 점에서 수사관과 전문가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나.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이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성인과는 매우 다른 형사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사를 실시하는 수사관은 물론 이에 참관하여 아동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문가 간에는 고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은 조사의 면담기법을 이해하고, 전문가는 수사관이 조사의 면담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한 면담기법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등 수사과정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질문 등으로 인해서 아동의 진술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는 진술분석을 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초내에서 아동이 수사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리가 변화되는 가를 측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3. 효율적인 운영체계

전문가의 운영에 있어서 경찰이 피해아동을 조사하기 전에 전문가를 피해아동과 사전에 면담을 금지하고 있다¹²⁴⁾. 조사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자가 아동의 태도와 자

123) 성인 정신지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목록 24번의 CD 1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실에서 검찰직원이 영상녹화장치를 작동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소장이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검찰주사보가 그 옆에서 단순히 그 과정을 조서화하면서 타자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준하는 영상물에는 해당할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CD 1장의 영상물이나 이를 검증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오지원, 진술조사 전문가의 역할, 2011년도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론교육자료집,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23-224면.

세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더불어 아동으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심리와 효과적인 질문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⁵⁾. 따라서 아동의 인지능력, 언어능력, 현재의 감성적·정서적 상태 등을 파악하는 조사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전에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 전문가는 현재, 고도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한 경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에 의하면 1단계 자문 및 가해자 조사 이후 신빙성 분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원스톱센터별로 전문가를 접촉한다. 2단계 전문가가 원스톱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의 기록과 개요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후, 2단계 전문가가 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자를 조사한 여경과 1단계 전문인력 및 가해자를 수사한 수사요원이 함께 사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작성한다.

2단계 전문가에 의한 진술을 분석할 때에도 사건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초기조사에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동의 진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청취하고 사례회의를 통한 진술분석시에는 그에 대한 예단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고도의 진술 신빙성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사건초기부터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홍콩의 경우 피해 아동 인터뷰 및 조사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담당자로 배정된 전문가들 중 일부를 해외연수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영입해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이 자극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거나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아동에게서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¹²⁶⁾

124) 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개선 계획, 2011. 4. 참조.

125) R. Porter, op. cit, pp. 122-123; 김태경·이영호, 앞의 책, 2009, 28면; 박종선, 앞의 책, 2008, 111면.

126) Patricia Ip, 아동성학대 이슈에 대한 홍콩의 인식과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54면.

4. 형사사법과 연계된 기관의 위탁교육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육시간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면담과정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현 수준의 교육에 대해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있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의견과 심층면담을 통한 잠정적 결론으로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경찰과 연계된 기관의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¹²⁷⁾. 이는 본 제도를 위한 준비를 현실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연수원이나 경찰수사연수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과 심화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사의 전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경찰의 유도질문 내지는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며, 확보된 진술을 분석하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법정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5. 1단계·2단계전문가의 통합 운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센터별 전문가 인력풀인 1단계전문가(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참여)와 권역별 별도로 구성된 2단계전문가(1단계 자문이후 신빙성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1단계전문가의 학력과 경력부분이 상당히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과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단계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을 2단계전문가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1단계전문가에 비해 자격과 경험을 갖춘 2단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을 위한 제안

2011년 현재 전국 21개의 원스톱지원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전문가는 4명이다. 나머

127) 이와 같은 의견은 판사와 검사도 제시하였다.

지 센터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어 진술조사시 외부 모니터링을 참여하게 하고 있다.¹²⁸⁾ 외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이나 전문가 측 모두에게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21개 원스톱지원센터에 17명의 전문가를 상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절 전문가 참여제의 성과와 전망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아동·장애인성폭력 전문가의견제도가 의 무화되었다. 2008년 조두순사건에 이어 2010년 김길태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은 또 다시 아픈 가슴을 쓰러내렸다.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10월에는 영화 ‘도가니’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조사기술이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아동의 초기 수사에 대한 성공적인 조사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능력과 함께 언어능력, 기억능력,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 두 번의 교육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의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한 집적된 사례의 과정을 거쳐 오류를 분석하고 교차간 분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동의 증언능력을 비판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의 증언능력을 옹호하는 등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자가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한다면 아동이 암시에 저항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신뢰롭게 진술해줄 수 있다는 것에는 연구자들이 합의를 본 상태이다.

이와 같이 아동진술의 신빙성확보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

128) 이 경우 1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후 진술녹화 CD 분석의 경우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측의 강력한 요구 등으로 부득이 심야조사(21:00-06:00)에 참여할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하여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문가로 인력풀에 구성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09:00-18:00)외에 참여한 사건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에, 아동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아동성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 아동의 기억에 대한 이해, 피해자 조사기법에 대한 이해 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아동 진술에 대한 사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에 들어와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성폭력의 밀행성으로 인한 증거확보의 곤란, 아동진술의 비밀관성·비논리성으로 인한 증명력 약화 등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미법과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제도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여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여진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전담판사와 검사와의 심층면담에서 요구되는 전문가가 수사에 참관하여 제출하는 의견조회에 대한 견해와 설문조회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전문가의견제도가 수사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지만, 대검찰청 자체에 진술분석관을 두고 있고,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2항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의 진술의견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은 없으나 적어도 본 제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2010년 4월 15일 본 제도의 입법화가 시작된 이래, 아동·장애인의 행동·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조회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먼저 본 제도를 통한 아동·장애인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사와 검사의 설문 조사 결과,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7.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제도를 통해 아동·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예방과 진술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에 첫 시행된 제도로 분석된 보고서 역시 2010년도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2011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분석보고서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도구의 적정성과 평가를 비교하였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기적인 양성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수치화하고 정형화하는 판단방식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전문가들도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적자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경험과 훈련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법정에서 제시한다면, 본 제도는 아동과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법익의 침해를 위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및 전문가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본 제도를 통해 아동·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장애인성폭력 예방과 감소가 구현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경찰청,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 매뉴얼, 경찰청, 2004.
- 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개선 계획, 2011.
- 경찰청, 범죄백서, 2010.
- 국정기획수석, 대통령서면보고서, 국책연구기관 정기 서면보고 자료, 2010.
- 김민지,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 및 증언의 허용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제24권 제3호, 2010, 77-90.
- 김중률, 수사상 진술의 형성과 분석, 수사연구, 2011.
- 김지선·박미랑·윤정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여성가족부, 2010.
- 김태경, 아동성폭력 피해가능성 평가기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태경, 아동성폭력 관련 영역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 김태경·이영호, 아동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기준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9권 제3호, 2010.
- 김현석, 우리나라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기대,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 김현정, CBCA와 RM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신빙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5권 제3호, 2010.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0.
- 박종선, 신뢰성 판단을 위한 아동의 진술분석, 대검찰청 형사법연구, 2006.
- 박종선, 증명력 판단기준, (주)한국학술정보, 2008.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 서울지방경찰청, 아동성폭력 수사 매뉴얼, 2004.
- 송동호·정성훈·정운선·양수진·김태경·김혜숙·이현혜, 성폭력피해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여성가족부, 2010.
- 아서베스트 지음·형사법연구회 옮김, 이완규·백승민 대표 번역, 미국증거법, 탐구사, 2009.
- 오지원, 진술조사 전문가의 역할, 2011년도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론교육자료집,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 유지웅,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0.
- 윤민우·이수정·최혜림,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심리학 및 행동과학분야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미국의 민간전문가 활용 예시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1호, 2011.
- 이미정,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2009.
- 이수정,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이수정,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분석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3호, 2009.
- 이수정, 성폭력피해아동 전담요원 교육 자료집,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2010.
- 이수정, 아동성폭력 피해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도구들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제2호, 2011.
- 이윤호·이금형,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7.
- 이재경, 형사절차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성 판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조은경, 신문기법에 관한 연구: 진술분석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05.
-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조은경,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전문가 증인 활용방안, 2008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보

- 고서, 2008.
- 조은경, 증언대 위의 과학, 시그마프레스, 2008.
-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 조은경, 진술신빙성 평가에 있어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 조은경, 국회업무와 관련된 효과적인 구술조사기법 개발,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 조은경·이희정 옮김, 증언대 위의 과학, 시그마프레스, 2008.
- 최승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아동진술의 문제점과 대책, 사실인정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자료집, 2005.
- 채규만,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의 성공적 정착 및 바람직한 추진방안, 경찰청, 2007.
- 최혜림·이수정, 성폭력 피해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도구의 문항반응 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2호, 2009.
- 홍성열, 진술분석기법의 타당성 연구, 대검찰청, 2007.
- 황은영, 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 Ip. P.,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아동성학대 이슈에 대한 홍콩의 인식과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Achenbach, T. M. & Edelbrock, C.,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Queen City Printers. 1983.
- Alesander Morgan, C., Facts, Values, and Expert Testimony, The Hastings Center Report, 199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1981.
- Blandon-Gitlin, I., Pezdek, K., Lindsay, D. S., & L. Hagen,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true and suggested accounts of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2009.
- Bottoms, B. L., & Goodman, G. 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ildren's testimony*,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1996
- Briere, J.,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6.
- Bruck, M., & Ceci, S., Forensic developmental psychologyL Unveiling four common misconcep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3, No. 6, 2004.
- Ceci, S., & Hembrooke, H., *Expert witnesses in child sexual abuse case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1998.
- Faller, K. C.,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controversies and best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Greuel, L., Offe, S., Fabian, A., *Glaubhaftigkeit der Zeugenaussagen* München: Psychologie Verlags Union, 1998.
- Herman, S., *Forensic child sexual abuse evaluations: Accuracy, ethics, and admissibility*. In K. Kuehnle & M. Connell(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2009.
- Herman, S. (2010). The role of corroborative evidence in child sexual abuse evaluation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doi: 10.1002/jip.122
- Herman, S., & Freitas, T., Error rates in forensic child sexual abuse evaluations, *Psychological Injury and Law*, 3, 2010.
- Iris Blandon-Gitlin, Pezdek, K., Rogers, M., & Laura Brodie.,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Event Familiarity on CBCA Ratings*, *Law and Human Behavior*, Vol. 29, No. 2, 2005.

- Kenneth V. Lanning, *Child Molesters: A behavioral analysis for professions investig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5th ed.). OJDP: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10.
- Klettke, B., Graesser, A. C., & Powell, M. B., Expert Testimony in Child Sexual Abuse Cases: The Effects of Evidence, Coherence and Credentials on Juror Decision Mak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24, No. 2, 2010.
- Kuehnle, K., & Connell, M., Child sexual abuse suspicions: treatment considerations during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0, 2010.
- Lanning, K. K., *Child Molesters: A behavioral analysis for professions investig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5th ed.). OJDP: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10.
- London, K., Bruck., Wright, D. B., & Ceci, S. J. (2008). Review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n how children report sexual abuse to others : Findings,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forensic interviewers. *Memory*, Vol. 16, No. 1, 2008.
- Melton, G. B., & Limber, S., Psychologists. involvement in cases of child maltreatment. Limits of role and expertise.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9, 1989.
- Morgan, C. A., Facts, Values, and Expert Testimony, *The Hastings Center Report*: 1993.
- Otgaar, H., Candel, I., Merckelbach, H., & Wade, K. A., Abducted by a UFO: Prevalence information affects young children's false memories for an implausible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2009.
- Pezdek, K., Morrow, A., & Blandon-Gitlin, I., et. al.,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 familiarity affects Criterion-Bases Content

-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9, No.1, 2004.
- Sanders, S., Expert Witness Ethics, *Fordham Law Review*, Vol. 76, No 3, 2007.
- Stern, P., *Preparing and Presenting Expert Testimony in Child Abuse Litigation: A Guide for Expert Witnesses and Attorneys*, SAGE Publications, 2011.
- Stephen, J. Ceci & Helene Hembrooke, *Expert Witnesses in Child Abuse Cas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 Stephen, J. Ceci & Maggie Bruck, *Jeopardy in the Courtroom: A Scientific Analysis of Children's Testimon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 Vidmar, N., Expert Evidence,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Ju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5, No 1, 2005.
- Vrij, A., *Detecting lies and deceit*, John Wiley & sons, LTD, 2000.
- Vrij, A., Akehurst, L., Soukara, S., & Bull, R., Will the Truth Come out? The Effect of Deception, Age, Status, Coaching, and Social Skills on CBCA Scores: *Law and Human Behavior*, Vol. 26, No. 3, 2005.
- Undeutsch, U., *Die Entwicklung der gerichtspsychologischen Gutachtentätigkeit*, Göttingen: Verlag für Psychologie, 1954.
- Undeutsch, U.,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ratea, Italy, June 1988.

부록 1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부터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과제의 일부로 현재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로 위촉 받아 활동 중인 전문가에 대해, 법률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전문가의견제도에 대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참여 동의의사 확인은 이메일 회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연구자 :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는 판사로서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년

개월

4. 귀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담판사로서의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만

년

개월

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몇 건 정도 담당하셨습니다?

① 10건 미만

② 10건 이상

③ 20건 이상

④ 30건 이상

⑤ 40건 이상

⑥ 기타

다음은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 귀하께서는 전문가의견제도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라
야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박사학위소지자
- 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③ 석사학위소지자
- ④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⑤ 대학생
- ⑥ 기타 (_____)

13. 아래의 질문은 위 11번의 질문 중에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3-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전문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진술분석에 대
한 축적 경험'을 거친 경우라야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 ① 1-10건 미만
- ② 10건 이상 ~ 20건 미만
- ③ 20건 이상 ~ 30건 미만
- ④ 30건 이상 ~ 50건 미만
- ⑤ 양적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 ⑥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보고서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대체로 만족
- ③ 대체로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15. 아래의 질문은 위 14번 질문에서 '대체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신 분
들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5-1. 전문가들의 보고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귀하께서는 전문가의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검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부터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과제의 일부로 현재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장애인 행동·진술분석」전문가로 위촉 받아 활동 중인 전문가에 대해, 법률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전문가의견 제도에 대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참여 동의의사 확인은 이메일 회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연구자 : 박종선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는 검사로서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년

개월

4. 귀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담검사로서의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만

년

개월

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몇 건 정도 담당하셨습니다?

① 10건 미만

② 10건 이상

③ 20건 이상

④ 30건 이상

⑤ 40건 이상

⑥ 기타

다음은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 귀하께서는 전문가제도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1.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공소제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가의 학위
- ② 전문가의 전공
- ③ 전문가의 경험
- ④ 전반적인 조사의 부적절성
- ⑤ 수치화에 대한 불신
- ⑥ 증거의 해석능력에 대한 불신
- ⑦ 기타 (_____)

10. 귀하께서는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의 결과에,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애매 또는 신빙성이 없다' 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 의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다
- ② 대체로 영향을 받는 편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11. 귀하께서는 진술분석 전문가가 제출한 의견과, 귀하께서 수사한 수사결과의 심증에 대한 일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일치하는 편이다
- ②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 ③ 별로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12. 귀하께서는 전문가에게 '학력'과 현장에서의 '진술분석 경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력
- ② 진술분석경험

13. 아래의 질문의 위 12번의 질문 중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께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6-1. 전문가들의 보고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귀하께서는 「아동·장애인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3

번호	연령대	녹취록	채점 근거	피해 증거	진술 능력	CBCA	RM	발생 정황	행동 변화	타당성	최종판단 (신빙성)
1	아동	×	○	○	○	16	16	12	0	0	높음
2	청소년	×	○	○	○	16	13	10	0	1	높음
3	아동	×	○	○	○	20	16	15	0	0	매우높음
4	아동	○	×	×	설명없음	23	13	11	0	7	있다/없다**
5	유아	○	×	×	설명없음	21	15	10	0	8	높음
6	아동	○	×	○	○	22	14	15	0	0	매우높음
7	성인	×	○	○	○	13	10	18	0	3	높음
8	성인	○	×	×	설명없음	24	16	13	0	0	높음
9*	아동	×	×	○	○	20	15	13	0	0	높음
10	아동	×	×	×	○	20	15	13	0	0	매우높음
11	아동	○	×	×	○	25	14	12	0	0	매우높음
12	성인	○	×	○	설명없음	26	9	13	0	0	매우높음
13	아동	○	○	×	○	26	14	14	0	3	매우높음
14	성인	○	○	○	○	18	6	13	0	1	높음
15	아동	○	○	○	○	21	13	9	0	1	높음
16	청소년☆	○	○	○	○	23	12	14	0	0	높음
17	아동	○	○	×	○	26	13	13	0	4	높음
18	아동	○	×	×	○	17	10	10	0	0	높음
19	청소년	×	○	×	○	27	15	14	0	0	매우높음
20	아동	×	○	×	○	21	14	12	0	0	매우높음
21	아동	×	○	×	○	18	13	14	0	0	높음
22	아동	×	○	○	○	11	13	9	0	0	높음
23	아동	×	○	○	○	11	12	13	0	0	높음
24	아동	○	×	○	○	19	15	14	0	1	매우높음
25	청소년	○	×	○	○	19	16	13	0	1	매우높음
26	성인	○	×	○	○	15	12	13	1	3	높음
						20/36	13/16	13/25		1.27	

분석한 사례들의 특성과 보고서 내용 정리

- 주1. *-녹취록이 별첨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이 많아 녹취록이라 볼 수 없음.
- 주2. **-"신빙성이 있는 편이나 신빙성을 재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술되어 있음.
- 주3. ☆-청소년이며 지적장애임.
- 주4. 진술능력 -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근거로 진술능력 유무를 판단하였으므로 진술능력으로 표기.
- 주5. ○-있음 / ×-없음
- 주6. 점수는 각 도구의 점수임. 도구별 총점은 CBCA 36점, RM 16점, 성폭력발생정황평가 25점, 행동변화평가 54점, 타당성평가 78점이며, 타당성평가는 낮을수록 그리고 나머지 도구는 높을수록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절단점수는 각 도구의 1/2에 해당하는 점수임.

부록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구성내용

조 항	구 성 내 용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성폭력 피해 진술의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아동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구이다.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용과 학령기 아동용으로 구분하였고 모든 내용은 그림으로 보다 재미있게 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된 주요개념은 안과 밖, 신체 부분명칭, 숫자, 진실과 거짓, 만지다의 총 6개 항목이다.
준거기반내용분석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은 5개의 범주에 19개의 하위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개별 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서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 0, 1, 2점으로 채점되는데, 총38점 중 19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성 평가	사실성 평가는 지각의 과정에 근거하는 기억과 내부처리에 근거한 기억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있어 지각적인 정보(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진술의 생생함, 감각기관의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정서와 감정, 이야기의 재구성, 사실성, 인지적 추론의 8가지 준거에 대해 0, 1, 2점으로 채점하여 총 16점 중 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성폭력 발생 맥락 평가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아동과의 면담, 부모 면담, 기타 정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각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의 기증성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정보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함으로써 아동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아동의 진술능력,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아동의 상태, 기타 정보라는 4가지 범주 하에 구성된 25개 문항에 대해 0점, 1점으로 반응할 때, 총25점 중 13점 이상이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행동 변화 평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서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조속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의 성적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평가를 근거로 9가지 범주 27항목에서의 행동변화를 탐지한다. 문항은 전혀 없으면 0점, 한 달에 한 번이면 1점, 일주일에 한 번이면 2점으로 채점하여 총 27점 중 14점 이상이면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본다.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는 이혼이나 재산권 다툼 등으로 인한 부모의 영향, 면담자의 암시 등을 검토함으로써 진술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아동이 평소 성격환상을 갖고 있었는지, 진술을 꾸며내는 것인지,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허위 지목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 진위여부, 정신적 상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의도성 여부, 허위지목 가능성 등 4가지 범주 하에 26개 문항에 대해 0점, 1점, 2점의 3점으로 반응하여 총 52점 중 26점 이하이면 아동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 출처: 이수정(2009)

治安論叢 (제28집)

2012년 10월 발행

2012년 10월 인쇄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인쇄처 : JK Co.(제이케이컴퍼니)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28집 치안논총
2012 Police Science Journal

발간등록번호
11-1332522-000003-10

第 28 輯
ISSN 1738-2971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T 031-285-0183 F 031-620-2989

이 책에 게재된내용은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